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1992. 12.

金 國 新(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李 惟 眞(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만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남북한은 統一國家를 이루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이란 暫定的 結合體制를 구축하고,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한 이후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統一課業을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구도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 합의하에 平和的이고 漸進的인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경제공동체」 형성단계는 남북한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統合過程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性格, 形態 및 形成方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經濟統合理論과 유럽공동체 및 獨逸統合事例 분석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성격과 형태를 규정하고, 남북한 經濟現況과 북한 경제의 변화전망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에 대한 基本方向과 具體的 實現方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문제는 당면한 정책과제가 아니라 2000년대를 향한 長期的 研究課題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形成方案을 모색하는 것은 短期的으로는 남북한 經濟交流·協力이 확대되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의가 있고, 長期的으로는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경제적 문

제들에 대한 對備策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第Ⅱ章 經濟統合의 理論 및 事例 研究

1. 經濟統合理論

經濟統合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自由移動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廣域市場圈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財政·金融 등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經濟的 單一國家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라사(Bela Balassa)는 경제통합의 과정을 아래와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각 단계는 경제통합이 진행되어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動態的 過程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체가 일종의 經濟統合 상태이다.

1) 自由貿易地帶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는 가맹국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貿易制限措置를 철폐하여 域內 自由貿易을 보장하는 한편, 域外 國家들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關稅 및 貿易政策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 關稅同盟

자유무역지대와 關稅同盟(Customs Union)은 역내 경제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나 관세동맹에서는 자유무역지대와 달리 域外 國家에 대해 共通關稅를 부과한다.

3) 共同市場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그 대상을 대체로 商品에만 국한시키는 데 반하여 共同市場(Common Market)은 역내 국가들간 商品 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기술 등 生産要素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4) 經濟同盟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공동시장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서 域內에서 商品 및 生産要素의 自由移動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맹국들이 금융, 재정, 농업, 운송, 통신,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 共同政策을 수립·집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5) 完全經濟統合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이란 가맹국 상호간에 超國家的인 機構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경제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完全經濟統合은 각국이 經濟主權을 포기한 상태로 사실상의 政治的 統合을 의미한다.

2. 統合事例研究

가. 유럽共同體

유럽統合의 기초가 된 것은 서독·프랑스·이탈리아·네델란

드·벨기에·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1951년 창설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이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취지는 석탄과 철강 市場을 통합하여 공동 관리함으로써 유럽에서 軍備競爭을 억제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1957년 6개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共同市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 경제공동체」를 창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재판소 등의 機構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유럽 경제공동체」를 창설함과 동시에 「유럽 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도 체결하였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共同市場 형성 노력은 먼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었다. 「유럽 경제공동체」는 商品移動의 自由化를 실현하는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域內 關稅의 완전철폐, 域外 共同關稅率 채택, 그리고 비관세 장벽 중 數量制限의 우선적 철폐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8년 7월에 「유럽 경제공동체」는 위의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關稅同盟을 완성하였다.

유럽 諸國은 1967년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유럽 원자력공동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1971년부터 유럽공동체는 共同通貨體制를 창출하여 換率變動에 따라 발생하는 去來費用을 줄이고자 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 기존의 체제를 개선한 「유럽 통화체제」가 형성되고 회원국 中央銀行間의 긴밀한 協調體制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공동체는 經

濟不況에 시달리고, 회원국의 이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유럽상품의 國際競爭力은 계속 떨어지게 되었다.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유럽통합 움직임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가속화되었다. 유럽공동체는 1985년 「域內 市場統合 白書」를 작성하여 1992년 말까지 實物 및 金融市場을 統合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였고, 1987년 「로마조약」을 개정한 「단일유럽협정」을 발효시킴으로서 市場統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9년에는 經濟·通貨統合의 실행계획을 담은 「들로르報告書」가 채택되었으며, 1990년 7월부터 通貨統合 제 1 단계가 시작되었다.

共同市場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유럽공동체 회원국 頂上들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會談에서 유럽의 政治·經濟的 同盟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이에 조인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주요 내용은 通貨 單一化 및 유럽 중앙은행 창설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을 규정한 經濟·通貨同盟 관련 부분과 유럽의회 권한 강화 및 공동 外交·安保政策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政治同盟 관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평가해 볼 때, 조약에 명시된 유럽통합은 각 국가들간의 단순한 提携段階를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共同體로 한 걸음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나가면 유럽인들은 금세기 말까지 經濟統合은 물론 政治的 統合까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합의에 의한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문제

는 통합을 통해 얻어질 長期的인 공동의 이익과 短期的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개별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나. 獨逸統合

동서독간의 경제관계는 1946년 전승 4개국의 公式協定에 의한 점령지역간 物物交換에서 시작되었다. 동서독은 1949년 10월 18일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 清算決濟計定 설치와 無利子 외상거래제도(Swing)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1951년 7월 6일 「內獨交易을 위한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상품교역은 美·蘇冷戰이 심화되는 가운데 1961년 베를린장벽의 설치로 인하여 동서독간 政治的 關係가 악화됨에 따라 일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동서독 교역은 統一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동서독 교역이 꾸준히 증가된 이유는 서독이 對東獨 交易을 경제적 이득보다는 政治的 目的에서 증대시켜 온 반면, 동독은 實質的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동서독 교역에 적극 임하였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物資 交易 뿐 아니라 産業協力を 추진하였다. 서독은 동독과의 經濟協力에 있어서 대체로 기술이전 등을 통한 垂直的인 協力關係를 형성하려 하였다. 서독은 동독에 特許 移轉 혹은 製造技術의 이양 등을 통하여 상품의 부품 및 완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였다. 또한 西獨企業들은 동독에 교통시설, 중화학공업 등에 直接投資 또는 共同生産을 추진하고 제 3 국에서 동독과 합작투자·공동생산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經濟協力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동서독간에 다양한 형태의 産業協力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經濟協力の 기본적인 성격은 양측의 산업을 상호보완적 형태로 발전시켜 쌍방의 실질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독의 동독에 대한 一方的 支援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사실상 서독은 동서독간 自由往來 보장과 동독에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위해 援助 性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經濟援助에는 서독과 베를린을 잇는 도로건설을 위한 지원금, 동독의 政治犯 釋放을 위한 保釋金, 그리고 동독에 대한 商業借款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서독은 동독측으로부터 동서독간 人的 交流를 보장받았는데 동서독 주민들의 인적 교류는 독일 民族의 同質性 回復에 크게 기여하였다.

獨逸統一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소련 및 東유럽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독일인들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히 이루어졌다. 동서독 經濟統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된 것은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이다. 동서독은 1990년 7월 1일 同 條約이 발효됨에 따라 貨幣 및 經濟統합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였다.

동서독간 貨幣統合의 기본원칙은 서독의 마르크貨를 共同通貨로 하며 서독 연방은행이 양독의 통화정책에 대한 全權을 행사한다는 것이었고, 經濟統合의 基本原則은 동독이 시장경제원리를 수용하여 競爭과 契約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유재산제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이 동서독 經濟統合은 동독 지역의 경제를 철저히 西獨化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급속한 統合過程에서 동서독 정부는 몇가지 정책적 오류를 범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通貨統合 과정에서 나타난 交換比率의 문제인 바, 동독의 貨幣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동독 지역 企業의 競爭力 상실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현재 동독지역의 경제는 통합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沈滯狀態에 있다. 동독지역의 國內總生産(GDP)은 1991년 중반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 말과 대비하여 아직도 그 折半 水準에 불과하다. 獨逸統一의 후유증은 經濟分野에서는 물론 사회적·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독지역 주민들의 文化的·心理的 疏外感이 통일독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南北韓 經濟統合에 주는 示唆點

가. 經濟統合理論의 示唆點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체제의 붕괴에 의한 吸收統合이 아

닌 漸進的 方法에 의한 經濟共同體의 形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경제도 일단은 統合理論에서 상정하고 있는 段階的 過程을 따라 漸進的으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통합이론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이론이므로 남북한과 같은 異質體制間 統合過程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統合理論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공통이익과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면 지역 국가들은 資源의 最適分配를 위해 經濟統合을 시작하게 된다. 경제통합 과정은 자유무역지대단계에서부터 공동시장단계에 걸쳐 實物經濟의 완전통합을 이룬 후, 政府次元에서 경제정책을 조정·협력하는 경제동맹을 형성하고 貨幣를 통합하여 單一經濟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생산, 투자, 가격이 인위적으로 설정되고 對外貿易은 생산계획에 맞추어 조정·통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自由貿易과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經濟統合이 자발적으로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같은 상이한 體制間의 經濟統合은 價格體系, 소유관계 및 기업활동 범위 등의 차이를 제거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진전될 것이다. 이 같이 경제체제상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면서 통합이 심화되어 共同市場段階에 이르면 자본과 노동의 自由移動을 의미하는 생산요소 통합작업은 경제체제간의 相異點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조정과 동시

에 추진될 것이다.

나. 유럽統合事例의 示唆點

유럽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으로는 첫째, 유럽통합은 4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통합과정은 漸進的이고 機能主義的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합방안보다 現實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럽통합사례는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新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만약 남북한 경제가 모두 침체에 들어서면 남북한간에 經濟的 利益이 대립되어 統合過程이 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交流·協力を 확대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相互 信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남북연합기」에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超國家的 機構를 설립하고 이 機構가 일정한 한도내에서 남북한의 經濟主權을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유럽통합에서의 經濟統合은 유사한 경제수준 및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유럽통합사례는 남북한이 經濟水準 격차를 해소하고 產業構造를 상호보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북한은 產業構造가 상이하고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으므로 교류·협력단계

에서부터 南北韓 産業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經濟發展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유럽통합사례는 특정 산업에 대한 部門別 統合이 共同市場 형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母胎가 된 것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이다. 남북한도 經濟共同體 形成過程에서 유럽의 사례를 교훈삼아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 및 「남북한 원자력공동체」 수립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럽의 경우 經濟統合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협력을 위해 超國家機構의 제도화 및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經濟協力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남북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南北聯合期에서 이를 운영할 「남북정상회담」, 「남북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制度化시키고 이들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共同市場을 형성할 단계에 이르면 南北韓間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 獨逸統合事例의 示唆點

독일통합사례 연구가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열거하기 전에 우선 동서독과 남북한의 差異點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GNP

의 규모에 있어 서독은 남한의 6배에 이르며, 동독은 북한의 8배에 달한다. 남북한간의 經濟力 隔差는 동서독간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人口面에서 서독은 동독의 4배인 반면 남한의 人口는 북한의 2배 정도이고, 面積面에서도 서독이 동독의 2배 이상이지만 남한의 면적은 북한보다 작은 편이다. 이와 같이 남한보다 월등한 經濟力을 지닌 서독도 동독을 吸收統合한 이후 경제·사회적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獨逸式 吸收統合은 남북한 통합방식으로 적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서독 교류가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동서독은 장기간 交流·協力을 통하여 相互 信賴를 쌓고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동서독관계는 단순한 상품교역으로 시작하였으나, 뒤이어 人的 交流 및 産業協力으로 이어졌다. 南北韓關係도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한은 交易段階에서 동서독이 택한 相互 無關稅原則과 동서독간 교역을 民族內部의 문제로 보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 關稅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지만, 남북간 無關稅去來는 GATT를 통해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셋째, 남북한 經濟協力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남한은 북

한에 대해 技術移轉 등 一方的 支援을 증대하여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은 현재 대등한 위치에서 相互 實利를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적이 經濟的 利益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여 평화적인 民族統一을 이루는 데 있으므로, 남한은 경제협력의 실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人的 交流의 측면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넷째, 統一 이후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南北韓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북한은 經濟共同體를 형성하여 產業構造를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경제체제간의 相異性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第三章 南北韓 經濟現況 및 變化方向 展望

1. 南北韓 經濟現況

가. 南 韓

남한은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인 市場經濟를 지향하여 왔으며, 저렴하고 잘 훈련된 勞動力을 量產하여, 천연자원·자본·기술 등의 부족에서 연유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 남한은 정부주도하의 적극적인 외자도입으로 초기 産業化에 성공하였으며, 높은 국내저축률은 國內資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高度成長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의 산업은 임금인상, 기술력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내외 政治·經濟的 狀況의 변화와 함께 성장을 위주로 한 經濟戰略의 근본적인 재평가, 정부 역할 재정립, 經濟政策 우선 순위의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 北 韓

1970년대 초 이후 북한 경제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침체 일로에 있다. 즉 북한 경제는 무리한 重工業 위주의 開發戰略, 자금자족적 폐쇄경제 고수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 技術落後, 産業施設의 老朽化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되었으며, 이는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消費財 生産增大運動, 獨立採算制의 도입, 農民市場의 확대, 지역단위의 直販賣 허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어서 生産性 向上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 북한은 輸出增大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 投資誘致를 위하여 「합영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투자여건의 미비로서 방국가들이 對北韓投資를 회피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최근에는 後見者 역할을 하던 舊蘇聯·中國 등이 과거와 같이 북한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지난 3년간 계속 마이너스 成長을 보여 왔으며, 1991년에는 마이너스 5.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현재 북한 産業施設의 가동률은 원료·연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變化方向 展望

가. 南 韓

향후 남한 경제는 고도성장 구조에서 성장률 6~7% 수준의 안정적인 成長構造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업구조 면에서는 勞動集約的 分野는 축소되고 知識·技術集約的 分野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構造調整이 진행될 것이다. 남한의 산업은 저임금에 바탕을 둔 가격경쟁이나 製造業分野의 양적 팽창에 의한 성장을 지양하고, 商品이나 工程의 혁신을 통한 (innovation-driven) 差等化로 경쟁전략을 수정해 갈 것이다.

이외에 향후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는 市場開放에의 대처, 경제활동의 재벌집중 억제, 經濟的 不平等의 해소, 환경보호 등이 될 것이다.

1980년대를 통해 經濟運營 및 産業開發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향후 남한정

부는 國內市場에서 활발한 競爭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면 서 원칙적으로 企業活動에의 직접 간여를 지양하게 되겠지만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 北 韓

북한은 經濟危機 극복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의 路線을 고집한다면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政權 기반이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는 아래와 같은 3단계의 變化過程을 거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1) 制限된 對外經濟開放段階

현재 북한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체제의 유지·강화이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난의 타개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이나 「자력갱생」 등 체제의 基本理念과 中央統制的 計劃經濟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특구와 「외국인 투자법」 등을 통해 통제된 對外開放을 추진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하에서의 통제된 開放政策은 투자유치나 생산성 제고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북한이 의도하는 經濟活性化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북

한 당국자들은 극히 제한적인 對外開放과 經濟運營方式의 조정으로는 經濟沈滯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2) 經濟改革段階

이 단계에서 북한은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의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市場機構를 도입하여 경쟁가격과 계획가격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동시장에서도 契約制를 도입하는 등 改革을 실시할 것이다. 위와 같은 改革措置들이 실시되면 북한의 경제특구도 활성화되어 合營·合作 등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며, 특구가 점차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영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격리된 경제특구에서의 開放·改革의 파급효과가 他地域으로 확산되는 것을 장기간 동안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특구만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經濟改革과 開放이 보다 확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經濟改革段階에 북한에는 「개방·개혁·투자유치 → 생산성제고·수출증대·외화획득·성장 → 재투자·성장 장애요인 제거 → 개방·개혁확대」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체제가 市場經濟化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市場經濟段階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計劃經濟內에서 市場機構의 도입에 바탕을 둔 개혁과 성장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면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북한은 二重 經濟體制를 지양하고 市場經濟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면적인 價格改革 조치를 실시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國營企業을 民營化하며, 토지 및 부동산의 私有化를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과제는 전면적인 價格自由化로 인한 물가폭등을 방지하고, 國營企業의 民營化, 경영합리화 등으로 발생하는 失業을 줄이며, 산업투자 및 社會 補助性 經費에 소요되는 財源을 조달하는 것이다.

第Ⅳ章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 推進方案

1. 基本方向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北韓 經濟의 변화방향을 고려하면서 북한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改革措置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 ① 남북한 경제체제간의 異質性을 해소하고, ② 相互補完的 成長을 도모하며, ③ 漸進的으로 양자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가면서 궁극적인 통일에

따르는 충격과 비용을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南北間의 활발한 經濟交流·協力を 바탕으로 部門別 統合과 産業構造調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共同市場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으로 규정하며,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경제정책을 협력·조정하며, 相互 市場을 개방하고 商品 및 生産要素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

2. 細部 推進方案

가. 經濟共同體 形成 準備段階

이 단계에서 남한의 政策目標은 교역·합작·공동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相互 依存度を 심화하여 남북한 경제관계를 制度化하고 북한의 開放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실시하는 제한된 경제개방정책은 經濟活性化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남한은 북한의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1) 交易擴大

直交易 擴大는 향후 南北交易 추진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인 바, 우선 남북한이 貿易協定, 清算計定協定이나, 기타 남

북거래용 共通通貨 발행, 왕래자 신변보장, 무이자 외상거래 (Swing)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交易擴大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南北交易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① 對北交易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② 정책의 一貫性을 유지하고 部處間의 異見調整을 위해 노력하며, ③ 對北交易의 독점이나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남한기업의 對北韓交易에서 발생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은 基金을 충분히 확보하여 對北交易에서 經濟外的인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을 보전해 주고, 交易으로 이익을 본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을 基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또 南北交易 活性化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法規의 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南北韓 交易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經濟·産業情報 및 기타 資料가 체계적으로 수집·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民間과 政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교역 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센터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남한의 企業에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의 관계기관과 經濟情報의 상호 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

(2) 合作事業擴大

南北間 合作事業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부속합의서」에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실현하여 對北韓投資 障礙要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은 투자보장, 二重課稅防止, 果實送金, 知的 所有權·特許權의 보호, 분쟁해결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들을 조속히 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對北投資促進 協議會」를 설치하여 유망한 投資事業과 投資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고 이를 남북한의 기업에 제공하며, 投資地域 및 分野의 選定을 지원한다. 同協議會는 합작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기타 紛爭의 調整 기능을 수행하거나, 對北韓 合作投資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며, 기술자나 경제인의 교환방문을 추진한다.

(3) 資源의 共同開發 및 多者間 協力の 活用

南北 經濟協力 중 지하자원·농수산자원·관광자원 등의 共同開發은 양측이 그 필요성과 利益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협력대상 분야에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본 바 있다. 남북한의 산업구조, 경제력, 資源 賦存現況을 감안할 때 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간 經濟協力の 중요한 형태가 될 것이다.

水產資源의 공동개발은 남북협력사업의 유망 분야이다. 남북한은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水產合作·合營會社의 공동운영, 원양어업의 공동진출 등을 통해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鑛物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과

풍부한 매장량을 가진 북한은 地下資源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觀光資源의 공동개발도 남북협력의 유망 분야이다.

또 남북한은 시베리아의 가스개발·송유관 건설, 중국의 농업개발, 베트남의 유전개발 등 제 3국의 資源開發事業에 적극적으로 共同進出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국이나 태평양 연안국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多者間 經濟協力, 地域經濟圈 形成에 남북한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의 기회를 넓히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經濟共同體 形成段階

(1) 産業構造 調整

북한이 본격적인 開放·改革을 추진하여 경제특구가 활성화 되면 남북한은 산업의 상호보완성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産業構造 調整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며, 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經濟協力を 모색한다.

우선 유럽 經濟統合 초기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나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유사한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와 「남북한 원자력공동체」를 결성하여 部門別 統合을 추진한다. 또 북한이 産業基盤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남북한은 가능한 품목·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상호 市場開放을 추진한다.

남북한은 더욱 효과적인 産業構造 調整을 추진하기 위해 양측의 정부와 민간 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업구조 조정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協議會에서 남북한은 유망산업의 선정과 지원, 쇠퇴산업의 退出 유도, 業種轉換 지원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남한은 이 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새로운 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하며, 특구간에 垂直的·水平的 分業을 유도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兩側의 生産施設을 연결하여 남북한 전체를 포함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南北聯合 推進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機構를 구성한다.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 「남북한 원자력공동체」, 「산업구조 조정 협의회」는 南北聯合의 기구로 편입되어 經濟共同體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 진다. 남북한은 연합기구들을 통해 經濟運營의 原理 및 制度를 상호 접근시키는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

남한은 북한의 전면적 價格改革 조치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의 물가안정, 産業生産力 확충, 流通構造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남북한은 남북각료회의 산하에 양측의 中央銀行長을 포함하는 「금융·통화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通貨政策 目

標와 운용지침을 협의하고, 남북한 화폐간의 固定換率制나 換率變動 허용폭을 설정하는 變動換率制를 채택하는 등 通貨政策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간다.

남북한은 북한의 民營化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각료회의 산하에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영화관리 협의회」를 설치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이 협의회는 民營化되는 회사의 資産 및 自生力을 평가하며, 북한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북한의 民營化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남한정부는 南北韓 企業의 技術提携를 적극 장려하며, 남한측이 경영자·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人力을 재훈련하고 북한기업이 國際競爭力을 확보하여 체제전환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필요시에는 북한의 민영화에 참여하는 남한의 기업에 低利貸出, 稅制惠澤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남북한은 經濟體制가 어느 정도 同質化되면 남북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自由貿易協定·關稅同盟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은 각 분야별로 북한의 경쟁력, 市場機構 정비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自由貿易協定 대상품목·부문 및 협정실행 일정을 差等化하여 다단계에 걸쳐 추진해 나간다. 한편 남북각료회의는 自由貿易協定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한다.

(3) 共同市場 推進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産業을 육성하여 고도성장

기에 들어서면, 남북한은 共同市場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추진한다.

- 市場의 점진적 통합
- 공동 연구·기술개발
- 地域的·構造的 隔差의 감소
- 南北聯合機構 權限의 계속적인 확대·강화
- 公害·環境·保健問題 등의 공동대처

남북한은 市場의 統合을 위해 자유로운 투자·기술협력·회사설립 등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세제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한다. 物理的 障壁의 제거를 위하여 상품의 남북한 境界線 통과시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人的 移動을 위한 제도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稅制的 障壁의 제거를 위해서 共通 附加價値稅와 共通 消費稅率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화, 시험검사제·기술규제의 단일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勞動力의 移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한 勞動生産性的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人口移動의 統制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상적으로는 북한지역에 고용기회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統一國家를 이루기 위해서는 經濟統合 過程에서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市場經濟로 전환하고 남북한이

共同市場을 추진해 가게 되면, 남북한 經濟問題는 좁은 의미의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政治·經濟·社會分野 전반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市場經濟의 원활한 운영은 이에 참여하는 行爲者의 교육수준이나 의식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교육이나 관리자층의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남북한은 지역적인 不均衡을 시정하고 社會福祉를 확대하기 위한 地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북한의 각 지역들이 상호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南北聯合의 기구들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강화되어 궁극적으로 남북한 각각의 經濟主權을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共同市場 推進段階가 완결되면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완성되게 된다.

第V章 結 論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발전하여 완전 經濟統合에 이르기 전까지의 中間段階를 「남북한 경제공동체」로 규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經濟統合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한 전체 경제가 균형된 成長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推進方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일통합 및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사례를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改革이나 異質體制間의 統合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에서는 市場經濟가 정착되기까지의 過渡期에 많은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유럽공동체와 같은 同質體制의 경우에도 經濟統合過程이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우 북한은 市場經濟로의 전환이라는 難題를, 남한은 남북간 經濟力 隔差를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조달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經濟統合이 가져다 줄 장기적인 成長效果를 기대하기에 앞서 統合에 따르는 중·단기적인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對備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經濟統合의 理論 및 事例 研究.....	7
1. 經濟統合理論	7
2. 統合事例研究	14
가. 유럽공동體	14
나. 獨逸統合	26
3. 南北韓 經濟統合에 주는 示唆點	38
가. 經濟統合理論의 示唆點.....	38
나. 유럽統合事例의 示唆點.....	39
다. 獨逸統合事例의 示唆點.....	44
第Ⅲ章 南北韓 經濟現況 및 變化方向 展望	48
1. 南北韓 經濟現況	48
가. 南 韓	52
나. 北 韓	55
2. 變化方向 展望	64
가. 南 韓	64
나. 北 韓	71
第Ⅳ章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 推進方案.....	90
1. 基本方向	90

2. 細部 推進方案	93
가. 經濟共同體 形成 準備段階	93
(1) 交易擴大	95
(2) 合作事業擴大	104
(3) 資源의 共同開發 및 多者間 協力の 活用	114
나. 經濟共同體 形成段階	118
(1) 産業構造 調整	118
(2) 南北聯合 推進	124
(3) 共同市場 推進	128
第V章 結 論	133
* 參考文獻	138

圖 表 目 次

〈표-1〉 南北韓 經濟力 比較(1991)	49
〈표-2〉 北韓貨幣의 對달러 換率變動 推移.....	58
〈표-3〉 北韓의 軍事費	59
〈표-4〉 南韓의 産業別 就業構造의 變化展望.....	66
〈표-5〉 南韓의 産業構造 變化展望(對GNP 構成比)	66
〈표-6〉 北韓의 海外投資誘致 希望分野.....	106
〈그림-1〉 南北韓 GNP 比較	51
〈그림-2〉 南北韓 1인당 GNP	52
〈그림-3〉 南北韓 經濟成長率	62
〈그림-4〉 對北搬入 承認品目 構造	96
〈그림-5〉 對北搬出 承認品目 構造	97
〈그림-6〉 對北交易 品目 構造(1988~91)	98

第 I 章 序 論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는 이념과 군사대결에 기초하였던 冷戰體制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國際秩序를 창출해 가고 있다. 新國際秩序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동유럽과 舊蘇聯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蘇聯邦이 해체된 이후 이 지역에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가 새롭게 뿌리를 내려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유럽공동체는 統合運動을 가속화하여 單一通貨 및 유럽중앙은행 설립 등을 통해 單一經濟圈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政治的 統合도 준비하고 있다. 유럽 통합운동은 다른 대륙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을 주축으로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체결을 서둘러 마무리짓는 등 國際經濟의 지역블럭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주어 이들 국가의 對韓半島政策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조된 東西和解 분위기 속에서 198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한국은 동유럽 및 구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北方外交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修交를 효시로 하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차례로 國交正常化를 실현하였다. 그 이후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1992년

8월에는 중국과 國交를 수립하였다.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는 러시아연방과 중국은 북한 중심의 對韓半島政策에서 탈피하여 남북한에 대한 等距離外交政策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한의 經濟力을 고려하여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체제는 韓·蘇, 韓·中修交를 전후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이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증대일로에 있어 世界經濟의 지역블럭화에 대응하여 東北亞地域 국가들 사이의 經濟協力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對外開放을 유도하고 있으며, 南北韓 關係改善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開放·改革과 이들 국가의 남한과의 관계정상화로 인하여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은 經濟難 解決과 外交的 孤立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일 등 西方國家와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姿勢變化는 남북한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同時加入하였으며, 그 이후 상호간 關係改善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南北韓은 1991년 12월 13일 제 5 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어 1992년 2월 19일 제 6 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고, 1992년 3월 18

일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와 더불어 남북한 교류·협력의 協議機構인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2년 9월 17일 제 8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정치·군사·교류협력의 3개분야 부속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이로써 南北關係는 정치분야의 「화해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사회·문화공동위원회」 등 모두 4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실행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相互 核査察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인하여 南北會談의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國際情勢와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가 南北韓 關係改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한반도 내부상황 역시 남북한간의 화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북한이 相互 核査察을 수용하고 改革·開放의 폭을 넓혀 나간다면, 남북간 교류·협력은 급속히 발전되어 남북한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盧泰愚大統領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定期國會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여 통일을 대비한 南北關係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남북한은 統一國家를 이루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이란 暫定的 結合體制를 구축하고,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한 이후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統一課業을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구도에 따라 남북한이 상호 합의하에 平和的이고 漸進的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면 경제공동체 형성단계는 남북한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統合過程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性格, 形態, 實踐方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經濟統合理論과 유럽공동체 및 獨逸統合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경제공동체의 성격과 형태를 규정하고 남북한 경제의 변화방향을 전망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基本方向과 具體的 實現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 중국과 동유럽 및 舊蘇聯에서 사회주의체제가 市場 經濟體制로 전환되어 가는 사례를 참조하였다.

「남북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개념규정은 經濟統合理論과 事例分析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도록 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완전한 經濟統合을 이루기까지의 中間過程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經濟統合 현상으로서, 남북한이 經濟體制의 同質性 증진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經濟政策을 협력·조정하며 상호 市場을 개방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이 상호

經濟協力を 통하여 ‘정치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통일논리’와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資源利用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統一費用을 최소화한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이와 같은 二元的 性格으로 인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에 관한 논의는 남북한 정치관계의 發展樣相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즉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구체적 형태 및 추진방법 등이 모두 남북한 政治的 協商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은 단순한 經濟問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남북한간 政治·軍事·社會·文化 전반의 관계개선 정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북한 정치적 관계가 經濟的 共同利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漸進的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문제에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어떠한 방법으로 「남북연합」을 이루고 운영하느냐 하는 政治的 論議는 이 연구의 영역을 벗어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문제는 당면한 정책과제가 아니라 2000년대를 향한 長期的 研究課題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形成方案을 강구하는 것은 短期的으로는 남북한 經濟交流·協력이 확대되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고, 長期的으로는 통일 이후에 발생할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 對備策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공동체」형성방안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모색하여 나

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지표의 성격을 띠며, 漸進的 統合過程을 통해서 統一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基本論理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第Ⅱ章 經濟統合의 理論 및 事例 研究

1. 經濟統合理論

經濟統合은 각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형성되며 統合形態와 範圍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概念定義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經濟統合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自由移動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廣域市場圈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財政·金融 등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여 經濟的 單一國家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經濟統合의 전제조건으로는 地理的 隣接性, 문화적 공통성, 경제정책 및 발전수준의 유사성,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공통의 이해관계 등을 들 수 있다.¹⁾ 남북한은 單一民族이 분단된 경우이므로 지리적 인접성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文化的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단지 經濟理念과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 모두 民族統一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족되지 못한 경제통합의 조건은 남북한 經濟統合의 障礙要因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남북한이 협력하여 이루어야 될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 孫炳海, 「經濟統合論: 理論과 實際」(서울: 法文社, 1988), pp. 17~25 참조.

발라사(Bela Balassa)는 經濟統合過程을 내부 결속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 5단계로 구분하였다.²⁾ 일반적으로 統合理論에서는 발라사가 제시한 5단계를 표준적인 구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動態的 過程인 동시에 그 자체가 일종의 經濟統合 상태이다. 그러나 각 단계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며, 각 형태가 이상적으로 기능하면 다음 단계로의 이전이 불가피한 하나의 連續性을 지니고 있다.

가. 自由貿易地帶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는 가맹국 상호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貿易制限措置를 철폐하여 域內 自由貿易을 보장하는 한편, 域外 國家들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關稅 및 貿易政策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가맹국이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域內에서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입된 域外 國家의 상품이 관세율이 높은 국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960년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포르투갈 등 유럽 7개국은 「유럽

2) 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61), pp. 1~7.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발족시켰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은 가맹국간의 工產品 交易에 대하여 關稅 및 기타 輸入制限措置를 철폐하였지만, 對外的으로는 각 가맹국이 독자적인 관세 및 輸入規制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예로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 이외에 1988년에 형성된 「미국·캐나다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FTA)을 들 수 있다.

나. 關稅同盟

자유무역지대와 關稅同盟(Customs Union)은 역내 경제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나 관세동맹에서는 자유무역지대와 달리 域外國家에 대해 共通關稅를 부과한다. 자유무역지대는 무역장벽의 제거라는 경제적 성격만을 갖고 있지만 관세동맹은 政治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관세동맹을 유지하려면 때로는 加盟國의 主權도 제약을 받게 됨으로 가맹국은 정치적 공동보조까지를 생각하게 된다.³⁾ 대표적인 예로서는 1834년에 결성된 「독일관세동맹」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설립되기 전까지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형성하고 있던 「베네룩스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독일은 關稅同盟이 형성될 당시 群小國家로 分立되어 있었고 통일적인 경제영역도 형성

3) 金世源, 「EC의 經濟 市場 統合」(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90), p. 35.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對外貿易으로는 영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신 공업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독일인들은 經濟的 統一을 이루고 工業發展을 기하기 위해 관세동맹을 형성하였다. 관세동맹을 형성할 당시 독일인들은 관세동맹이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政治的 統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 共同市場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이 그 대상을 대체로 商品에만 국한시키는 데 반하여 共同市場(Common Market)은 역내 국가들간 상품 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기술 등 生産要素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공동시장의 실현은 勞動移動의 自由化를 의미하므로 加盟國은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사회보장제도 등을 정비하고 勞動組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共同市場형성은 가맹국의 社會政策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유럽공동체를 들 수 있는데, 유럽공동체는 共同市場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을 마련하여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재고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투자은행을 설립하여 生産의 現代化를 위해 지원하고 域內 낙후지역의 재개발에 財政援助를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될 것이다.

라. 經濟同盟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공동시장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로서 域內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自由移動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가맹국들이 금융, 재정, 농업, 운송, 통신, 사회복지 등의 分野에 있어서 共同政策을 수립·집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頂上들은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회담에서 「경제·통화동맹」과 「정치동맹」을 목표로 한 「유럽동맹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이에 조인하였다. 同 條約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거나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면, 유럽공동체는 1993년부터 경제·통화동맹을 추진하여 1999년까지 유럽中央銀行을 설립하고 유럽單一通貨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1992년 6월 2일 실시된 덴마크의 국민투표 결과 「마스트리히트條約」이 부결됨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예정대로 경제·통화동맹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 完全經濟統合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이란 가맹국 상호간에 超國家的인 機構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경제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完全經濟統合은 각국이 經濟主權을 포기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政治的 統合을 의미한다. 유럽의 경우 경제통합과 아울러 외교, 군사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루어 「유럽合衆國」(Unit-

ed States of Europe)을 이루겠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아직까지 經濟統合段階를 거쳐 평화적으로 單一經濟圈 및 政治的 統合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域內 地域 對 域外 地域과의 관계에서 본 분석관점과 역내 개별 회원국의 입장에서 본 분석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統合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은 關稅同盟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關稅同盟理論이 바이너(J. Viner)에 의하여 체계화되기 이전에 전통적 학자들은 관세동맹의 결성으로 인한 관세 및 비관세의 철폐가 自由貿易을 실현시킴으로써 가맹국들의 資源分配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이너는 관세동맹은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의 두가지 經濟統合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관세동맹의 결성이 반드시 유리한 경제적 효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⁴⁾ 무역창출효과는 域內 貿易이 확대되어 財貨의 공급원이 생산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무역전환효과는 域內 關稅의 철폐와 域外 關稅의 설정 이후 종래 非加盟國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같이 自由貿易과 保護貿易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관세동맹은 加盟國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자

4)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London: Stevens & Sons, 1950) 참조.

원의 최적분배를 유도하는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자원의 최적 분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經濟統合에 따른 각 가맹국의 내부적 이익으로는 첫째, 域內關稅의 철폐로 인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市場이 확대됨으로써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效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효과는 통합 이후 市場規模가 域內地域 전체로 확대되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제품의 生産費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經濟統合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動態的 效果로서는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와 생산과정에서 技術革新이 이루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生産性이 향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⁵⁾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지금까지 언급한 통합효과 이외에 工業化 政策의 효율적 수행, 産業構造의 相互補完的 發展, 공동체 단위의 외환 절약, 대외 교섭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南北韓의 경우 경제통합은 市場擴大에 따른 규모의 경제이익과 경쟁제고에 따른 기술진보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 軍事費의 경제용도전환에 따른 投資擴大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후 東獨地域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市場經濟體制로의 이행과정은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5) 安承喆, 「國際經濟의 理論과 政策」(서울: 法文社, 1989), pp. 404~405.

2. 統合事例研究

가. 유럽共同體

유럽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經濟統合의 前提條件이 충족되어 있었고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을 經濟的 動機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유럽통합의 추진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것이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基督教 文化로 통일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4세기 이후 유럽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운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유럽통합에 대한 이상은 평화적인 宗教運動으로 표출되거나 혹은 나폴레옹의 경우와 같이 군사적 정벌의 형태로 표명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自由主義的 知識人들은 유럽에서 잔혹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럽통합운동을 추진하였지만 당시의 國粹主義的 政治風土에 압도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황폐화되었고 國際秩序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서유럽은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압도되었으며, 반면에 동유럽은 共產化되어 소련과 軍事同盟을 형성하였다. 이 같이 超強大國이 된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유럽통합운동을 촉진시켰다.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온 유럽統合運動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合衆國」의 건설이다. 그러나 유럽의 政治統合은 經濟統合이 가시적인 성

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유럽공동체의 발전과정을 경제통합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본다면 편의상 ① 關稅同盟 形成段階(1951~1968), ② 共同市場의 擴大段階(1969~1984), ③ 共同市場의 完成段階(1985~1992), ④ 通貨 및 政治統合 準備段階(1992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1) 關稅同盟 形成段階(1951~1968)

유럽공동체의 기원이 된 것은 서독·프랑스·이탈리아·네델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1951년 창설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이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는 超國家的인 執行機構(High Authority)의 주관 아래 회원국간 석탄·철강 제품에 대해 共同市場을 형성함으로써 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重武器 생산 원료인 석탄과 철강 부문에 있어서 域內 생산·유통·소비는 물론 거래까지 공동 관리함으로써 유럽에서 戰爭을 방지 하자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설립의 기초가 된 「파리조약」은

6) Bruce G. Doern, *Europe Uniting* (Toronto: C.D. Howe Institute, 1991), pp. 12~13; John Pinder, *European Community: The Building of a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1991); Jeffery Jessop,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g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Aldershot: Edward Edgar, 1990) 참조.

① 회원국간의 거래에 대한 關稅 및 數量制限의 완전한 철폐, ② 회원국간의 생산·거래·가격 및 기타 조건 등 모든 행위에 대한 차별금지, ③ 同 分野에 대한 개별적인 정부의 補助·支援禁止, ④ 일체의 競爭制限 행위 및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는 特定産業에 국한하여 상호 市場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통합의 범위가 협소한 制限的 性格의 경제통합이었다. 그러나 특정한 經濟部門에서는 회원국의 經濟主權을 제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경제통합의 심도는 발라사(Balassa)가 언급한 共同市場段階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部門別 統合機構는 다른 산업분야와 政策的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여 유럽합중국 수립을 주장하는 聯邦主義者들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형성에 힘입어 1952년 「유럽 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政治共同體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럽군대의 설립에 대해 프랑스議會가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좌절되었다. 政治統合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6개 회원국은 보다 機能主義的 接近으로 선회하여 통합의 대상을 經濟部門으로 한정하였다. 1957년 6개국 外相들은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하여 향후 12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창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각료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등의 기구를 구성하였다. 「유럽 경제공동체」를 창설함과 동시에 이들은 「유럽 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설립하는 조약도 체결하였다. 「유럽 원자력공동체」는 핵에너지의 공동개발 및 사용의 공동규제를 주요한 설립목표로 하여 운영되었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창설 취지는 경제 전분야에 걸친 共同市場을 형성하여 회원국간의 지속적·균형적인 經濟成長 및 生活水準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로마조약」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① 회원국간의 關稅 및 貿易에 대한 物量制限 철폐, ② 제 3국에 대한 對外共通關稅 및 공동 무역정책 수립, ③ 회원국간 노동·자본·서비스의 自由往來를 방해하는 요인 제거, ④ 農業部門에서 공동정책 수립, ⑤ 공동 수송정책 수립, ⑥ 域內 自由競爭의 보장, ⑦ 회원국간 經濟政策의 조정과정 설정, ⑧ 共同市場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회원국 法制의 상호 접근 추진, ⑨ 노동자들의 雇用機會 및 生活水準 향상을 위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설치, ⑩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설립 등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을 수립하여 회원국간 주민, 상품 및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共同市場 형성 노력은 먼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었다. 「유럽 경제공동체」는 商品移動의 自由化를 실현하는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역내 관세의 완전철폐, 域外 共同關稅率 채택, 그리고 비관세 장벽 중 數量制限의 우선적 철폐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년의 준비 기간을 1년 6개월 앞당긴 1968년 7월에 「유럽 경제공동체」는 위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關稅同盟을 완성시켰다. 關稅同盟의 대상이 된 상품 이동의 자유화는 工產品은 물론 農產品의 역내 자유이동과 價格 平準化 및 대외 보호장벽 구축과 병행된 것이었다.

「유럽 경제공동체」의 급속한 발전은 당시 유럽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극복하여 經濟好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국가간의 關稅 부과가 産業化 初期段階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유럽국가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인식이 유럽공동체 회원국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關稅同盟이 촉진되었던 것이다.

(2) 共同市場 擴大段階(1969~1984)

1960년대 중반에 이르자 「유럽 경제공동체」는 域內 關稅를 폐지하고 역외 국가들에 대한 共同貿易關稅를 부과하여 관세 동맹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대부분 완성하였다. 그러나 관세 동맹 이외에 「로마조약」에서 共同市場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자유로운 자본과 서비스의 이동, 經濟法과 租稅條件의

均等化 등의 목표들은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7년 6개 회원국은 共同市場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유럽 원자력공동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라 명명하고 그 조직을 강화하였다.

1969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유럽공동체 頂上會談에서는 유럽공동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영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73년 1월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이 가입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9개 회원국으로 되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인구가 2억 6천만명, GNP가 8천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經濟單位가 되었다.⁷⁾

1969년 헤이그 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1980년까지 經濟政策과 通貨政策을 단일화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經濟統合을 이룩할 것을 결의하였다.⁸⁾ 또한 이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경제문제 이외에 對外政策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政治的 統合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헤이그 회담의 결정에 따라 유럽공동체 각국의 外務長官들은 1970년 말부터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였고, 저명한 학자들은 유럽

7)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각각 가입하여 會員國이 현재의 12개국에 이르렀다.

8) Rothar Späth, *Der Traum von Europa*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89), 홍순도, 김경숙 譯, 「유럽의 꿈」 (서울: 동아출판사, 1991), p. 50.

공동체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유럽議會의 강화방안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1971년부터 유럽공동체는 共同通貨體制를 창출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去來費用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세계적인 石油波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공동통화체제의 추진은 정지되었다. 자국내의 經濟不況과 높은 失業率을 극복하려는 회원국들의 국내적 관심으로 인하여 市場統合 작업도 성과가 미미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 기존의 체제를 개선한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가 형성되었다. 「유럽통화체제」는 회원국 中央銀行間의 긴밀한 協調體制를 구축하여 換率變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1979년 제 2 차 油價波動의 여파로 유럽의 경제가 長期 沈滯를 겪게 되자 유럽 각국은 經濟, 通貨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서 이해가 대립되어 유럽통합 노력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공동체는 經濟不況에 시달리고, 회원국의 이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유럽商品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전자제품과 같은 尖端産業分野에서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고 있었고, 기타 勞動集約的 産業分野에서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역내 국가간 保護貿易主義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자본과 기술협력의 강도를

높혀 유럽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부진하였던 經濟統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3) 共同市場 完成段階(1985~1992)

유럽공동체의 共同市場 형성 촉진에 관한 논의는 1982년에 시작되어 세 차례의 閣僚理事會를 거쳐 1985년 3월 합의에 이르렀다. 1982년 6월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구체적 立法計劃書인 「역내 시장통합 백서」를 작성하여, 1992년 말까지 實物 및 金融 양면에서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同 白書는 역내 국가간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282개의 요인을 物理的, 技術的, 稅制的 障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⁹⁾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rogram)을 제시하였다.

유럽공동체는 1987년 7월 「로마조약」을 개정한 「單一유럽協定」(Single European Act)을 체결하였다. 「단일유럽협정」이 발효된 이후 유럽공동체는 지금까지 非政治的 分野에 한정된 機能主義的인 統合方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회원국

9) 同 白書는 物理的 障壁으로 국경통과시 상품 및 인적 이동에 대한 제한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技術的 障壁으로 회원국들간의 기술 및 법적 규제의 차이에 기인한 기업들의 협력 제한요소, 금융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분야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稅制的 障壁으로 상이한 간접세 및 소비세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에 대한 유럽공동체 기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집단, 정당, 정부 및 國際組織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經濟統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를 가르켜 학자들은 유럽통합과정에서 新機能主義的 接近 方法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일유럽협정」에서 유럽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共同市場의 완성, 社會政策의 통합과 경제·사회적 균형, 공동의 연구·기술 개발정책, 공동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 공동 안보협력 등이다. 同 協定의 특징은 유럽공동체의 政策領域을 무역·통화 만이 아니라 사회·보건·환경분야 등으로 확대하였다는 데 있다. 同 協定은 지역간 격차와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조치의 확대실시 및 社會的 結束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제·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市場統合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通貨 單一化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1980년대 후반부터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던 通貨統合 노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通貨統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공동체는 1989년 經濟 및 通貨統合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내용의 「들로르報告書」(Delors Report)를 발표하였다. 「들로르報告書」에 의하면 유럽공동체는 우선 1990년 7월 1일까지 域內 市場에서의 資本移動 및 對外支給決濟를 완전히 자유화시킨다는 것이다. 通貨統合의 1단계에서 유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을 모두 유럽통화체제(EMS)에 가입시켜 환율을 안정시키며, 2단계에서는 1996년까지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1998년까지 通貨政策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유럽 中央銀行에 이양하고, 3단계로서는 單一通貨를 발행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通貨統合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域內 國家間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法制整備 작업에 착수하여, 1991년 말 현재 유럽공동체 執行委員會가 제안한 총 282개의 안건중 209건이 유럽공동체 閣僚理事會에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市場統合 작업은 1970년 중반 이후 침체되었던 유럽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3년 이후 평균 2% 미만의 GDP증가율을 보여 왔던 유럽공동체 경제는 1985년 이후 기업들의 投資心理가 회복되어 1988년에는 GDP성장률 3.8%를 기록함으로써 제 1 차 油價波動 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¹⁰⁾ 유럽공동체 執行委員會의 발표에 의하면 유럽공동체가 域內 市場統合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中期的(5~6년)으로 전망하였을 때, GDP는 4.5% 정도 증가하고, 所費物價는 6% 가량 하락할 것이며, 약 180만 정도의 新規雇傭이 창출될 것

10) 閔充基,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p. 33.

으로 예상되고 있다.¹¹⁾

(4) 通貨 및 政治統合 準備段階(1992년 이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가속화된 유럽통합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전되었다. 1985년 「역내 시장통합 백서」를 작성하여 1992년 말까지 實物 및 金融市場 統合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였고, 1987년 「로마조약」을 개정한 「단일유럽협정」을 발효시킴으로서 市場統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9년에는 經濟·通貨統合의 실행계획을 담은 「들로르報告書」를 채택하여 1990년 7월부터 通貨統合 제 1 단계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共同市場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하나의 유럽」에 대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 1952년 유럽 政治共同體 설립을 추진하다 좌절되었던 政治的 統合運動을 재개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미·소를 축으로한 冷戰體制가 와해됨에 따라 유럽인들 사이에 經濟的 統合뿐만 아니라 政治的 統合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1년 8월 19일 소련에서의 보수파 군부 쿠데타 실패 이후 蘇聯聯邦이 붕괴되자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政治統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경제적 변영에 대한 희망과 다극화되어 가는 新國際秩序가 유럽통합운동을

11) Paolo Cechini, *The European Challenge 1992* (EC Commission, 1988), 이종항 譯, 「유럽의 挑戰 1992」 (서울: 형설출판사, 1990), p. 180.

촉진시킴에 따라 유럽공동체 頂上들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회담에서 「유럽동맹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이에 조인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1986년 市場統合을 추진하기 위한 「단일유럽협정」이 발효된 이후 두번째로 「로마조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2000년까지 「유럽합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럽공동체가 해야 할 기본적인 義務事項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주요 내용은 通貨單一化 및 유럽 中央銀行 창설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을 규정한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과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및 공동 외교·안보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동맹(European Political Union: EPU)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치동맹조약」은 유럽동맹 市民權 制度를 도입하여 각 회원국의 國籍을 보유한 모든 개인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居住移轉의 自由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 보유 등 유럽동맹시민(citizen of the Union)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평가해 볼 때, 조약에 명시된 유럽통합은 각 국가들간의 단순한 提携段階를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共同體로 한 걸음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통화동맹(EMU)에 대해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각국이 經濟

主權의 중요한 부분인 通貨政策을 유럽 中央銀行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聯邦主義(federalism)를 지향하는 구상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通貨統合의 결과로 자국의 主權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통합의 움직임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표류하고 있다.¹²⁾ 덴마크는 國民投票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부결시켰고, 이제까지 유럽통합의 선봉에 있던 프랑스에서도 同條約이 부결되리라는 우려속에 國民投票가 실시된 결과 찬성 51%, 반대 49%로 간신히 통과되었다.¹³⁾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나가면 유럽인들은 금세기 말까지 經濟統合은 물론 政治的 統合까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합의에 의한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을 통해 얻어질 長期的인 공동의 이익과 短期的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개별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나. 獨逸統合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美·英·佛·蘇 등 4

12) 通貨統合은 유럽공동체 회원국들로 하여금 換率 調整이라는 경제정책 도구를 상실하게 하고, 남부유럽 국가들의 實質賃金을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상승하게 하여 統一獨逸의 경우처럼 失業率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오늘의 世界經濟」(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5~7.

1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8, 1992, pp. 72~74.

개 戰勝國이 分割占領한 결과 서쪽 지역에는 1949년 9월 7일 「독일연방공화국」이, 동쪽 지역에는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어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미·소간 冷戰이 심화되는 동안 동서독은 정치적으로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 平和共存體制를 수립하여 經濟的 協力關係를 유지해 오다 1990년 平和的 統一을 달성하였다. 獨逸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동서독이 장기간에 걸친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주민들간의 相互 信賴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獨逸統一의 직접적 원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르바초프의 開放·改革政策으로 동유럽에서 민주화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동독이 자유화 물결에 휩싸여 급격한 體制崩壞를 맞게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통일은 동독이 서독측에 의해 급격히 吸收統合된 것으로 교류·협력의 증대가 統一基盤을 구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政治的 統合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즉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동서독 경제체제의 同質性을 증진시켜 政治統合을 유도해 내는 방향으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점진적인 경제통합 및 정치통합을 이루지 못한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의 높은 經濟力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나타내며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다. 獨逸統一까지의 경제 교류·협력과정과 통일후 경제적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貿易去來 段階(1950~1971)

東西獨은 1945년 연합군의 점령에 의해 분단된 이후 1990년 통합될 때까지 각기 상이한 經濟體制를 유지하였다. 서독은 市場機能에 의한 自由競爭 原則下에서 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되, 政府가 경제적 불평등 축소와 社會福祉 증진을 위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社會的 市場經濟體制(social market economy)를 유지하였다.¹⁴⁾ 한편 동독은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여 經濟運用面에서 관료들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동독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生産手段을 국유화하였지만 手工業, 농업, 서비스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형태의 私有財産權을 인정하였다.

동서독은 經濟體制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통일될 때까지 경제교류를 계속해 왔다. 동서독간의 경제관계는 1946년 전승 4개국의 公式協定에 의한 점령지역간 物物交換에서 시작되었다. 1949년 10월 18일 동서독은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 清算決濟計定 설치와 無利子 외상거래제도(Swing)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1951년 7월 6일 「內獨交易을 위한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였다.

14)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로서 1951년에 제정된 勞動者參與法과 1952년에 제정된 會社法을 들 수 있다. 노동자참여법에 의해 석탄과 철강산업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會社重役과 동등한 代表權을 인정받았고, 기타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會社法에 의해 회사중역의 1/3에 해당하는 대표권을 갖게 되었다.

同 協定은 상품 및 용역교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支拂單位로는 VE(Verrechnungseinheit)라는 決濟單位를 사용하고,¹⁵⁾ ② 貿易代金の 청산은 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지 않고 동서독의 중앙은행에 설치된 清算計定을 통하여 1년 단위로 결제되며, 양독은 代金清算計定을 미리 마련하여 양측의 輸出과 輸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 일정 금액의 한도내에서 超過 預金信用으로 동독의 輸入 超過를 인정하고 있다. 서독은 동독상품에 대한 關稅 및 농지 부과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해오다, 1951년 GATT에 가입할 때 「東獨産 상품에 대한 內獨交易 特惠原則」을 공인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동서독 교역을 內國去來로 인정받았다. 「베를린협정」은 1960년 8월 6일 일부 수정되었지만 통일전까지 동서독간의 內獨交易을 뒷받침하였다.

동서독 상품교역은 美·蘇間 冷戰이 심화되는 가운데 1961년 베를린장벽의 설치로 인하여 동서독간 政治的 關係가 악화됨에 따라 일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동서독 교역은 統一을 이룰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동서독 교역이 꾸준히 증가된 이유는 서독이 교역을 經濟的

15) 동서독간에는 공식적인 換率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貿易貸金の 결제를 위한 共通 清算單位(VE)를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VE와 서독마르크는 1:1로 결제되지만, VE와 동독마르크 사이의 換率은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동독의 中央銀行은 동독의 수출상사에게 10만VE에 대하여 8만동독마르크를 지불할 수도 있었고, 12만동독마르크를 지불할 수도 있었다.

側面보다는 政治的 目的에서 증대시켜온 반면, 동독은 實質的인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동서독 교역에 적극 임하였기 때문이다.¹⁶⁾

1967년 이후 서독은 內獨交易을 확대할 목적으로 동독상품에 대한 送狀 申請義務를 폐지하여 交易節次를 간소화하였고, 「산업설비공사」를 설립하여 동독의 설비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독은 동독이 전년도에 반입한 物品總額의 25%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無利子 産業財政借款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 힘입어 內獨交易量은 1950년 7억 4천만마르크에서 1970년에는 44억 4천만마르크로 증가하였으며, 1981년에는 116억 2천만마르크에 달하였다.¹⁷⁾ 統一 直前인 1989년의 동서독 교역은 153억 3천만마르크에 이르렀으며, 서독은 동독의 제 2의 교역국으로 그리고 동독은 서독의 제15위 교역국으로서 經濟協力關係를 유지하였다.

(2) 産業協力 段階(1972~1989)

1970년 3월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래 兩獨關係는 급

16) 동서독간 교역은 商品構造面에서 相互補完的이었다. 서독의 搬出品은 화학제품, 기계, 전자제품, 광산물, 철강제품 등 基礎資材, 生産財 그리고 投資材가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搬入品은 농산물, 정유가공제품, 섬유류, 의류, 화학제품, 갈탄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17) 金瑩允, 余仁坤, 黃炳惠,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97.

속히 개선되었다.¹⁸⁾ 동서독은 1972년 5월 「일반통행협정」을, 그리고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상호 同等權 및 정상적인 선린관계,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 존중, 무력포기 및 경계선 존중, 單獨代表部의 포기, 軍備縮小, 영역 한정 원칙 및 독립·자주성의 원칙, 協力 및 社會開放, 常駐代表部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독은 同 條約을 통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해 주는 대신 人的 交流의 活性化를 모색하였다. 이어 동서독은 1973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양국 정부는 1974년 3월 본과 동베를린에 각각 代表部를 교환·설치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은 物資交易 뿐 아니라 産業協力을 추진하였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대체로 기술이전 등을 통한 垂直的인 協力關係를 형성하였다. 서독은 동독에 特許 移轉 혹은 製造技術方式의 이양 등을 통하여 상품의 부품 및 완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였다. 또한 西獨企業들은 동독에 交通시설, 중화학공업 등에 直接投資 또는 共同生産을 추진하고, 제 3 국에서 동독과 合作投資·共同生

18) 서독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을 통하여 동독을 合法的 國家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은 동독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할슈타인(Hallstein)원칙을 제정하여 제 3 국이 동독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면 서독은 그 보복으로 그 나라와의 外交關係를 단절하였다. 이 같은 冷戰構圖下에서 유지되어 오던 동서독관계는 1969년 社民黨의 브란트(Willy Brandt)가 집권하면서 도약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브란트 수상은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하여 舊蘇聯 및 東유럽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동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産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經濟協力을 강화하였다.

1984년 동서독 정부는 양독간 국경지역에 산재한 「假性칼리 채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同年 서독의 폴크스바겐(Volkswagen)社는 동독 기업과 合作投資를 실시하여 동독 지역에서 연간 30만대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1980년대에는 서독의 폴크스바겐社 등 서독의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대부분이 동독의 기업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989년 12월까지 약 3%만이 東獨企業과 협력관계를 맺었다.¹⁹⁾ 그 이유는 동독의 기업들은 콤비나트 형식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콤비나트에 속한 기업들은 외국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合作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서독간에 다양한 형태의 産業協力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經濟協力の 기본적 성격은 동서독 산업을 상호보완적 형태로 발전시켜 쌍방의 실질적 이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一方的 支援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한편 동독은 合作企業의 외부 자본참여 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한 「합작투자법」을 고수하며 외국 기업들의 投資誘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 결과 동서독 산업협력의 總量은 加工生産, 위탁생산 및 공동생산과 같은 生産面에서의 협력의 경우 무역량의

19) 최남용, 「독일통일과 유럽경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 (서울: 한신경제연구소, 1991), p. 175.

7~10% 정도였고, 서독 기업이 49%의 자본참여를 한 合作投資는 무역량의 2~3%에 국한되어 있었다.²⁰⁾

産業協力 이외에 서독의 동독에 대한 援助 性格의 경제협력으로는 상업차관 제공, 도로사용료 및 政治犯 保釋金 지불 등을 들 수 있다. 서독정부는 1983년과 1984년에 서독의 은행차관단이 동독측에 특별한 附帶條件을 달지 않고 각각 10억마르크와 9억 5천만마르크 규모의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데 대해 채무보증을 썼다.²¹⁾ 그리고 西베를린으로 향하는 도로 및 철도 사용료로 서독은 매년 5억 7천 5백만마르크를 동독에 지불하였으며, 通行道路 건설비용과 비자發給費用으로 연간 약 8천 5백만마르크를 지불하였다.²²⁾ 그외에도 소포우송비용 등의 용역비용과 동독의 政治犯 釋放을 위한 保釋金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서독 화폐가 동독으로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서독은 동독측으로부터 동서독 간 人的 交流를 보장받았는데 동서독 주민들의 인적 교류는 독일 民族의 同質性 回復에 크게 기여하였다.²³⁾

20) 朴聖祚, “東西獨間의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 交流에 주는 示唆點,” 國土統一院 編, 「南北韓 經濟交流 協力の 摸索」(서울: 國土統一院, 1989), p. 360.

21) 獨逸 經濟社會統合 研究를 爲한 短期調査團, 「獨逸經濟社會統合에 관한 研究」(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p. 43.

22) 金相圭, “統獨에의 接近過程과 이의 外交史的 意味,” 「國際政治論叢」, 제30집 1호 (1990), p. 389.

23)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한 사람의 數는 1970년 125만명에서 1978년 317만명, 1986년 37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동독인의 서독방문 경우는 1970년 104만명에서 1978년 143만명, 1986년 17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朴聖祚, “東西獨間의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 交流에 주는 示唆點,” pp. 370~373.

동서독은 1986년 文化協定, 1987년 科學·技術協力協定 및 環境保護協力協定을 체결하고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협력체제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전에 동독체제는 급격히 몰락하였다.²⁴⁾ 1989년 12월 동독공산당은 政治主導權을 포기하고 1990년 3월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서독에 의한 吸收統一을 주창한 東獨基民黨 주축의 獨逸聯盟에 정권을 넘겼다.

(3) 統一 以後 問題點

西獨과 東獨의 민주정부는 1990년 5월 18일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同 條約이 발효됨에 따라 貨幣 및 經濟統合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였다.²⁵⁾ 동서독간 貨幣統合의 기본원칙은 서독의 마르크를 共同通貨로 하며 서독연방은행이 양독의 통화정책에 대한 全權을 행사한다는 것이었고, 經濟統合의 기본원칙은 동독이 시장경제원리를

24) 獨逸統一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소련 및 東유럽의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독일인들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오스트리아 國境이 개방되자 東獨體制에 염증을 느낀 많은 東獨人들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동독인들의 서독으로 대규모 탈주와 함께 동독내의 民主化運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989년 11월 9일 東西冷戰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되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동독의 정치체제는 급격히 와해되었다.

25) 1990년 8월 31일 동서독은 「독일통일 실현을 위한 동서독간의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同年 10월 3일 統一條約이 발효됨에 따라 동서독은 공식적으로 統一되었다.

수용하여 경쟁과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고 私有財産制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이 동서독 경제통합은 동독지역의 經濟를 철저히 西獨化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급속히 이루어진 統合過程에서 동서독 정부는 몇가지 정책적 오류를 범하였다.

통일 이전의 동서독간 換率은 약 4.4:1이었다. 그런데 화폐 통합과정에서 동독의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었다. 동독마르크貨와 서독마르크貨의 교환비율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는데, 賃金, 年金, 장학금, 집세, 지대 등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지불금의 경우에는 1:1의 等價交換이 이루어졌다. 負債 및 債券에 대해서는 1:2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貯蓄預金은 연령별로 환전액수를 제한하여 1:1로 환전되었다. 통합과정에서 1:1 또는 1:2로 조정된 교환비율은 東獨經濟에 환율인상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동독산 商品의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은 價格競爭力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동독지역 주민들이 市場 開放으로 인하여 서독과 외국 상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동독지역의 기업들은 대량으로 倒産하게 되었다.

경제통합에 따른 財産權의 私有化는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蘇聯 점령하에서 실시된 土地改革에 의한 몰수된 재산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949년 이후 몰수된 재산은 前所有者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반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²⁶⁾ 그런데 財産權 返還原則은 동독지역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한 法的 所有關係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民營化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經濟統合 초기에 동독 정부는 315개의 콤비나트를 해체하고 이로 인해 생긴 8,000여 개의 기업과 2만 여개의 都小賣業, 7,500개의 호텔 및 음식점, 약국, 서점 등을 民營化하기 위해 信託管理廳을 설립하였다. 신탁관리청은 초기에는 기업을 正常化한 이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價格을 낮게 평가하여 즉시 매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기업과 부동산은 前所有者가 반환신청을 하면 소유권에 대한 法的 訴訟이 제기됨으로, 서독 및 외국의 潛在的 投資家들이 동독지역 企業의 引受를 기피하였다.²⁷⁾

경제통합과정에서 범한 政策的 失手로 인하여 현재 동독지역의 경제는 통합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沈滯 狀態에 있다. 동독지역의 國內總生産量(GDP)은 1991년 중반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 말과 대비하여 아직도 그 折半水準

26) 1991년 3월 새로 제정된 財産法에 의하면 沒收된 財産의 返還에 관한 기본 법률은 유지되지만, 賣却된 企業에서 新規投資 및 고용의 증대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前所有者는 返還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財政的 補償을 받게 되었다.

27) 財産權 처리문제는 막대한 시간과 行政人力이 소요되고 있다. 1992년 6월 말 현재 총 105만명이 220만건의 재산에 대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이중 18만건이 처리되어 私有化 措置를 실시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처리율은 8.4%에 불과하다. 통일원, 「통독 2주년 보고서」(서울: 통일원, 1992), p. 39.

에 불과하다.²⁸⁾ 製造業分野는 전반적으로 서독지역 제품과 價格競爭力이 있는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지역의 공식적인 失業者는 1992년 6월 말 현재 117만명이나, 단축노동자, 정부지원 雇傭創出措置該當者 및 轉職訓練者 등을 합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210만명에 이르고 있다.²⁹⁾ 통일후 독일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엄청난 投資를 하여 왔지만, 동독지역 주민의 生活水準을 현재 서독지역 주민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매년 2천억마르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³⁰⁾

獨逸統一의 후유증은 經濟分野에서는 물론 사회적·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東獨住民들 대부분은 새로운 생활양식과 관행에 적응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을 독일의 二等國民이라고 자조하고 있고, 동독을 서독의 植民地라고 생각하면서 劣等感에 빠지기도 한다. 불만에 찬 청소년들은 極右派的 傾向을 보이며 외국인에 대해 테러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독지역 주민들의 文化的·心理的 疏外感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統一獨逸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政治化되어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서독의 민주적인 政治體制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經濟體制가 대부분의 동독주민에 의해 정

28) 위의 책, p. 25.

29) 위의 책, p. 49.

30) 金學成, “獨逸의 統一後遺症과 內的 統合의 諸問題,” 「統一問題研究」, 第4卷 3號 (1992 가을), p. 235.

당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어 理想的 葛藤이 적기 때문이다.

3. 南北韓 經濟統合에 주는 示唆點

가. 經濟統合理論의 示唆點

남북한 경제통합은 國家 對 國家의 문제가 아니라 民族 內部的 문제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국제경제통합이론은 南北韓 經濟統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統合理論은 2개 이상 국가의 經濟單位가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일반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체제의 붕괴에 의한 吸收統合이 아닌 漸進的 方法에 의한 經濟共同體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경제도 일단은 統合理論에서 상정하고 있는 段階的 過程을 따라 漸進的으로 통합되어 갈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통합이론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이론이므로 남북한과 같은 異質體制間 統合過程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統合理論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공통이익과 相互補完關係가 형성되면 지역 국가들은 자원의 最適分配를 위해 經濟統合을 시작하게 된다. 경제통합 과정은 자유무역지대단계에서부터 공동시장단계에 걸쳐 實物 經濟의 완전통합을 이룬 후, 政府次元에서 경제정책을 조정·

협력하는 경제동맹을 형성하고 貨幣를 통합하여 單一經濟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생산, 투자, 가격이 인위적으로 설정되고 對外貿易은 생산계획에 맞추어 조정·통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自由貿易과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經濟統合이 자발적으로 시작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사회주의권에서는 民間企業의 자유로운 經濟活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간의 통합은 단순히 민간기업의 활동에 의해 機能的으로 확대되어 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같은 상이한 體制間의 經濟統合은 價格體系, 소유관계 및 기업활동 범위 등의 차이를 제거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진전될 것이다. 이 같이 경제체제상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면서 통합이 심화되어 共同市場段階에 이르면 자본과 노동의 自由移動을 의미하는 생산요소 통합작업은 경제체제간의 相異點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조정과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과 같은 單一民族의 경우 共同市場의 완성은 사실상 政治的 統合의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므로 남북한 共同市場段階는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經濟同盟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유럽統合事例의 示唆點

유럽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으로는 무엇보다도 經濟統合이 4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형성 초기에는 聯邦國家 또는 國家聯合의 형태를 통하여 일시에 政治統合을 달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1952년 유럽 정치공동체 설립운동이 실패하자 유럽 지식인들은 聯邦主義的 統合方案이 비현실적임을 깨닫고 機能主義的 方法으로 선회하였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은 사회·경제·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부문별로 漸進的 統合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政治的 統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의 경우 북한은 聯邦制 統一方案을 제시하여 정치적 일괄타결에 의해 일시에 남북한 聯邦國家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남한은 漸進的이고 機能主義的인 통합방법을 선호하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통합과정은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적 일괄타결에 의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非現實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유럽통합사례는 점진적 통합을 위해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新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信賴構築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機能主義的 統合方案이 원활히 수행되어 1969년에는 關稅同盟을 완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經濟不況이 시작되자 機能主義的 統合方案은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던 회원국들은 자국의 經濟的 利益에 몰두하게 되어 經濟統

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회원국간의 利害對立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기구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정치단체 및 國際機構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新機能主義的 統合方法을 채택하여 共同市場의 완성은 물론 정치통합까지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만약 남북한 경제가 모두 침체기에 들어서면 남북한간에 經濟的 利益이 대립되어 統合過程이 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交流·協力을 확대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信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남북연합기」에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超國家的 機構를 설립하고 이 기구에 일정한 한도내에서 남북한의 經濟主權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럽통합에서의 經濟統合은 유사한 경제수준 및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유럽통합사례는 남북한이 經濟水準 격차를 해소하고 產業構造를 상호보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대부분 後期產業社會段階에 도달하여 비교적 높은 國民所得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消費行態도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는 산업 및 자원의 공동개발문제보다는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과 노동, 자본 및 서비스 등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더 역점을 두고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남북한은 經濟體制가 相

異하고 經濟發展水準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품교류 및 합작투자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남북한 산업이 相互補完的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經濟發展方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유럽통합사례는 특정 經濟部門에 대한 部門別 統合이 共同市場 형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經濟統合은 발라사(Balassa)의 경제통합 5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정들을 밟아 발전해 왔다. 즉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단계를 거쳐 완전한 經濟統合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공동체의 母胎가 된 것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이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나 「유럽 원자력공동체」와 같이 特定 經濟部門 혹은 特定産業에 국한하여 상호 市場을 통합하는 형태를 部門別 統合(sectoral integration)이라고 부른다.

부문별 통합은 통합범위가 협소한 制限的 性格의 경제통합이지만 제한된 영역내에서의 통합의 深度는 공동시장의 단계에까지 이른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部門別 統合 機構는 석탄·철강 등의 제한된 영역에 한해 超國家的인 統制力을 행사하였다. 남북한도 경제공동체 形成過程에서 유럽의 사례를 교훈삼아 交流·協力段階를 거쳐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특정 분야에 대하여 부문별 통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은 「석탄·철강공동체」 및 「원자력공동체」를 수립하여

석탄, 철강 및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대한 共同市場을 형성하고 공동시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유럽의 경우 經濟統合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협력을 위해 超國家機構의 제도화 및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經濟協力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남북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交流·協力を 통하여 신뢰가 구축되면 政治的 協力を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유럽공동체 운영기구인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유럽재판소 등과 같은 기구를 남북한간에 설립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南北聯合期에 접어들게 되면 이를 운영할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制度化시키고 이들의 권한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共同市場을 형성할 단계에 이르면 유럽공동체에서 共同市場을 완성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을 형성하고 노동자들의 福祉向上을 위해 노력하였듯이, 남북한은 「남북한사회기금」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共同市場段階에서는 유럽공동체가 域內 國家間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물리적, 기술적, 세제적 장벽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였듯이 남북한도 實物 및 金融市場 統合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다. 獨逸統合事例의 示唆點

독일통합사례 연구가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열거하기 전에 우선 동서독과 남북한의 差異點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독과 남한은 市場經濟體制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經濟力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國民總生産(GNP)의 규모에 있어 서독은 남한의 6배에 이르며, 1인당 GNP는 4배에 이른다. 둘째, 동일한 計劃經濟體制를 운영한 동독과 북한 또한 經濟力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NP의 규모에 있어 동독은 북한의 8배에 이르고 1인당 GNP는 10배에 달한다. 셋째, 남북한간 경제력의 隔差比率은 동서독간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人口面에서 서독은 동독의 4배에 달한 반면 남한의 人口는 북한의 2배 정도이고, 面積面에서도 서독이 동독의 2배 이상이지만 남한의 면적은 북한보다 1/4 정도 작다. 이와 같이 남한보다 월등한 經濟力을 지닌 서독도 동독을 吸收統合한 이후 경제·사회적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獨逸式 吸收統合은 남북한 통합방식으로 적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서독 교류가 남북한관계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동서독은 장기간 交流·協力을 통하여 相互 信賴를 쌓고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기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동서독관계는 단순한 上品交易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人的 交流 및 産業協力으로

이어졌다. 남북한관계도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남북한은 交易段階에서 동서독이 택한 상호 無關稅原則과 동서독간 교역을 民族內部의 문제로 보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 關稅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지만, 남북간 無關稅去來는 GATT를 통해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셋째, 남북한 경제협력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남한은 북한에 대해 技術移轉 및 一方的 支援을 증대하여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 合作投資 등 직접적인 産業協力은 상품교역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았다. 동서독 경제협력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經濟援助의 성격을 띠었고, 그 대가로 서독은 동독으로부터 人的 交流를 보장받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가 가능했던 이유는 동독이 북한에 비해 비교적 開放的인 체제를 유지해 왔었고, 서독이 經濟力에서 동독보다 훨씬 우세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북한은 동독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남한은 서독에 비해 經濟力이 약하다. 따라서 남북한은 대등한 위치에서 相互 實利를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의 궁극적 목적이 經濟的 利益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북한의 開放·改革을 유도하여 평화적인 民族統一을 이루는 데

이므로 남한은 경제협력의 실리적인 측면 만이 아니라 人的 交流의 측면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넷째, 통일 이후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南北韓 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統一基盤을 구축한 점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政治的 統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즉 독일통일은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동서독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經濟的 同質性을 증진시키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독일통일은 동독체제의 급격한 붕괴로 서독측에 의해 吸收統合된 것으로, 교류·협력과 政治·經濟的 統合은 불연속적인 과정이었다.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사회주의 경제가 市場經濟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對備策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급격한 통일을 이룬 독일은 통일 이후 서독의 높은 經濟力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남북한은 통일된 독일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經濟共同體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南北統一을 달성한 이후 北韓地域에 있는 기업들이 급격히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한은 경제공동체 형성 단계에서 產業構造를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체제간의 相異性을 점차로 해소하여 남북한 共同市場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 共同市場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북한은 시장의 자율적인 價格決定機能을 구축해야 하며, 남한은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정착을 위한 각종 社會保障制度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三章 南北韓 經濟現況 및 變化方向 展望

본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현황과 정책의 주된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방향을 전망하여 統一費用을 최소화하고 통일 이후 韓國經濟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南北韓 經濟協力 및 공동체 형성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은 신뢰할 만한 자체 經濟統計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외부에서 북한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외 각급 기관에서 집계되었거나 발간된 북한 經濟統計 자료의 경우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서 南北韓 經濟現況을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제한된 자료라도 전체의 경향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¹⁾

1. 南北韓 經濟現況

남북한은 해방 이후 각각 輸出指向的인 市場經濟體制와 自給自足的인 計劃經濟體制를 지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상호 대조적인 경제발전전략의 결과, 남한은 협소한 市

1) 본 연구에서는 數値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해서 統一院을 중심으로 한국의 각종 기관에서 집계한 統計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統一院과 舊蘇聯의 사회과학원, 일본무역진흥회(JETRO) 등에서 집계한 통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는 북한경제연구센터, 「1989~90년 북한경제 개관」(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國土統一院,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서울: 國土統一院, 1990) 등 참조.

場과 資源의 부재를 극복하고 경쟁에 바탕을 둔 輸出産業의 육성과 工業化에 성공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반면에, 북한은 해방 직후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남한에 비해 相對的으로 발달된 産業基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中央統制的 資源配分의 비효율성과 利潤動機의 부재에서 오는 생산성의 저하로 인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經濟成長이 한계에 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1년 현재 남북한의 經濟力과 厚生水準을 비교하면 아래

〈表-1〉 南北韓 經濟力 比較(1991)

	단 위	남 한	북 한
총인구	천 명	43,268	22,028
증가율	%	0.93 ¹⁾	1.61
경제활동인구	천 명	18,487 ¹⁾	9,834 ¹⁾
대총인구비	%	60.0 ¹⁾	67.8 ¹⁾
GNP	억달러	2,808	239
1인당GNP	달 러	6,498	1,038
경제성장율	%	8.4	-5.2
1인당후생수준	달 러	3,263 ¹⁾	465 ¹⁾
대외무역총액	억달러	1,534	27.2
외채	억달러	391.3	92.8
군사비	억달러	105.9	51.3
군사비 /GNP	%	3.8	22.4

1) 1990년 수치

資料: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서울: 統一院, 1991); 韓國銀行, 「1991년 북한 GNP 추정결과」(서울: 한국은행, 1992).

표와 같다.²⁾ 남북한의 인구증가율, 농업인구 비중, 산업기술 수준, 1인당 GNP 등 經濟指標를 비교하면 북한 경제는 남한에 비해 15~20년 가량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

日本 公社債研究所가 실시한 投資에 대한 國家危險度 評價에 의하면 1986년 이후 남한은 10점 만점에 7.6~8.4점을 얻어 「거의 우려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북한은 2.0~2.2점으로 「크게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經濟成長의 잠재력은 남한이 7~8점대를 기록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이 많이 있는」 범주에 속하고, 북한은 3~4점대로 「거의 없다」로 평가되고 있다. 對外支拂能力面에서 남한은 8점대로 「양호한 편」이고, 북한은 2점 미만으로 「극히 좋지않고 불안하다」는 평가이며, 國際的 信賴度는 남한이 8점 정도인 반면, 북한은 2점대에 머무르고 있다.⁴⁾

북한은 해방 이후 農業의 集團化와 중공업 중심의 産業化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1960년대 전반까지는 남한의 經濟成長率을 앞섰으며, 1973년까지 남한보다 높은 1인당 GNP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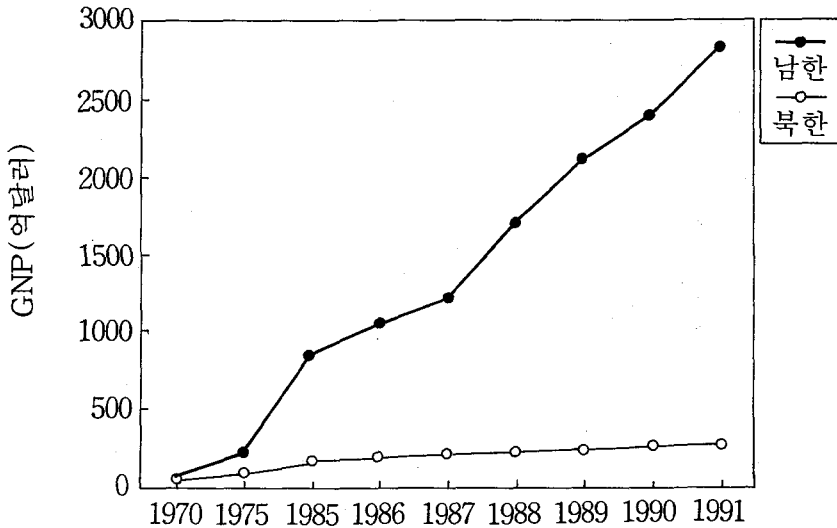
2) 厚生水準은 개인소비에 교육·보건·주택 등 정부의 社會福祉支出을 더한 수치이다.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經濟關係 發展을 위한 基本構想」(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p. 4;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서울: 統一院, 1991), p. 45.

3) 윤여창, “북한의 농림수산업의 실태와 남북한 농림수산물의 교역가능성에 관한 연구,” 統一院, 「北韓·統一 研究 論文集: 交流·協力分野」(서울: 統一院, 1990), p. 103.

4)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0), pp. 12~15.

유지하였다. 그러나 남한이 본격적으로 經濟開發을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남한의 經濟成長率은 북한의 경제성장률과는 대조적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은 GNP면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남북한의 經濟的 隔差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 南北韓 GNP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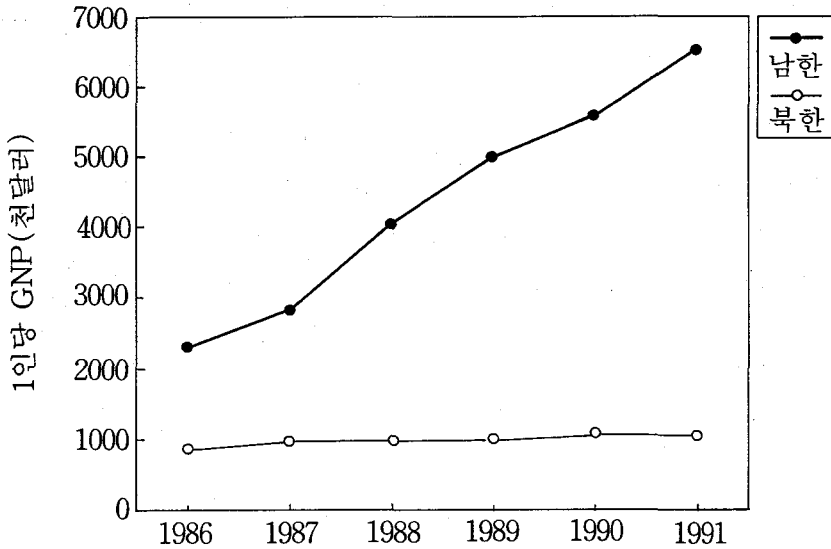


資料: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서울: 統一院, 1991); 韓國銀行, 「1991년 북한 GNP 추정 결과」(서울: 韓國銀行, 1992).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經濟力 隔差는 남북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즉 남북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經濟共同體 형성은 어려울 것이며, 급격한 經濟統 合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수반되는 충격과 비용이 엄청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림-2〉 南北韓 1인당 GNP



資料: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서울: 統一院, 1991); 韓國銀行, 「1991년 북한 GNP 추정 결과」(서울: 韓國銀行, 1992).

가. 南 韓

남한은 해방 이후 적극적인 教育投資로 저렴하고 잘 훈련된 勞動力을 量産하여 천연자원이나 자본 등 여타 生産要素의 부족에서 연유하는 經濟發展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産業資本이 전무한 상태였던 남한 경제는 韓國戰爭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엄청난 財政赤字와 貿易赤字를 내면서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남한은 政府主導下의 積

極的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輕工業을 중심으로 초기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은 外國資本의 도입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輸出主導型 經濟發展戰略이 성공적으로 진전되어 국제적으로 外債 償還能力이 인정되자 더욱 원활한 외화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입된 외자는 정부의 통제하에 낮은 利子率로 대기업들에 대출되어 戰略的으로 선택된 분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남한 경제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12% 수준의 高度成長을 기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대규모의 重化學工業 투자가 성공하여 연평균 8%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한편 남한 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外債負擔을 안고 성장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30%를 상회하는 貯蓄率로 인하여 형성된 國內資本이 經濟成長의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

남한의 經濟開發에 있어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본이 부족하였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정부가 經濟開發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資本集約的인 産業化를 추진할 수 있었다. 정부는 戰略産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産業政策을 통해 유망 산업분야를 지정하여 補助金·輸出金融 등을 제공하거나, 외국기술을 유리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國內産業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輸入制限 조치를 취하여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면서 原料의 評價切下 등을 통한 수출촉진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62년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투자환경의 조성, 輸出産業의 육성과 전자공업·석유화학공업·조선·철강 등 基幹産業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工業化와 산업구조의 高度化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特定産業의 개발에 計劃段階부터 개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고 자원의 集中的 投資를 가능하게 하여 産業化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한이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經濟計劃이 市場機能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활발한 競爭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특정 산업분야 개발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즉 産業生産이 비교적 적은 수의 최종재에 집중하여 생산구조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으며, 소수의 재벌기업에 産業活動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⁵⁾

1970년대 말 제2차 石油波動으로 高인플레이와 低成長을 동시에 경험한 후 남한은 기존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經濟成長 戰略에 대한 논의와 국내의 政治經濟的 狀況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經濟體制의 근본적인 재평가, 정부의 역할 재정립, 경제정책의 새로운 목표 설정이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제5공

5) Michael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pp. 474~475.

화국 정부는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하고, 貨金凍結과 강력한 긴축재정 등 安定化 政策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經濟成長率 7~8%의 안정적인 추세속에서 經濟基調가 전환되어 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다시 고도성장의 강박관념에서 연유한 景氣浮揚策의 남용으로 인하여 經濟成長率이 6.8% (1989)에서 13%(1987)에 이르는 심한 기복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1986~1988년간에는 3低 현상(低달러, 低油價, 低金利)에 힘입어 최고의 好景氣(연평균 경제성장률 12.9, 13.0, 12.4%)를 누렸다. 그런데 民主化와 더불어 노사분규 등의 타격으로 1989년의 經濟成長率이 6.8%로 감소하자, 여기에 다시 성급한 景氣浮揚策을 실시하여(「경기활성화 대책」, 1990. 4. 4) 1990년부터의 거품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다시 부도기업의 증가, 주식·부동산 가격하락 등 경기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경제가 安定基調를 되찾아 가면서 발생하는 經濟構造 調整過程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構造的 危機狀況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北 韓

북한 經濟政策의 기본 노선은 中央集權의 命令經濟體制로서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에서 통제되며, 모든 生産手段이 국유화·집단화되어 있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의 經濟開發戰略은 기

본적으로 生産力의 급속한 증대를 위해 農業보다는 工業에 치중하고, 자립적인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위해 생산재를 생산할 수 있는 重工業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민족경제건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라는 기치 아래 自給自足的 혹은 閉鎖的인 經濟를 유지하면서, 대외무역은 경제개발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국내 수요에 기반을 둔 自給的인 生産構造 형성을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서만 이용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貿易依存度는 매우 낮다.

경제정책은 정무원 산하의 國家計劃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는데, 1년 이내의 短期計劃과 1년 이상의 長期計劃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수 차례의 中·長期 經濟開發計劃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간으로 수립·시행되어 왔다.⁶⁾

- 機構·設備 등 生産財의 자금자족
- 農業部門의 저축을 공업부문에 투자
- 投資財源은 국가재정으로 충당
- 消費抑制를 위해 노동자·농민의 實質所得 증가 억제
- 生産性 향상을 위해 理念教育과 사회주의 경쟁운동 강화
- 對外交易은 자체 생산 불가능한 機資材 획득에만 활용

북한에는 수요·공급이나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價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의 가격은 중앙의 계획당국에 의

6) 오관치, “경제계획의 전개과정과 성과,” 이태욱 編, 「北韓의 經濟」(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24~125.

해 실제 商品價値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상품의 유통도 國家計劃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價格體系는 상품을 거래하는 經濟主體(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인소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업 도매가격, 산업 도매가격, 상업기관 소매가격, 농민 시장가격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정해지므로 物價는 큰 변동이 없으나, 物資不足, 輸入資材 가격상승에 따라 매년 2~3%정도 상승하고 있다.⁷⁾

貨幣는 가격의 임의적 조작으로 인하여 상품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交換錢票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計劃當局이 수요를 억제하고 기업에 대한 國家統制를 강화하기 위해 現金流通을 통제하고 있어 화폐의 기능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換率도 외환의 需給狀態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中央計劃當局이 임의로 결정하며, 公定환율·무역환율·비상업환율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북한은 外換管理를 강화하고 外貨의 國內流通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外貨兌換券 制度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화폐의 對달러 換率 변화추이는 다

7) 企業 都賣價格은 생산원가에 기업소 순소득을 가산하여 동일한 소유형태의 공장 기업소간 생산재 거래에 사용되며, 産業 都賣價格은 기업도매가격에 間接稅와 같은 거래 輸入金을 더한 것으로 소유형태가 다른 기업소간의 거래와 기업소간의 소비재 거래에 사용된다. 또한 商業機關 小賣價格은 기업 도매가격에 상점의 流通費와 利潤을 더한 것으로, 개인소비자에 적용되는 가격이며, 農民 市場價格은 국가계획에 따른 결정이 아닌 그때 그때의 需給狀況에 따라 결정된다. 海外投資研究所,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1), pp. 28~30.

음과 같다.⁸⁾

〈表-2〉 北韓貨幣의 對달러 換率變動 推移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공정 환율	0.96	0.87	1.07	1.02	0.94	0.94	0.94	0.97	
무역 환율	2.05	1.79	2.43	2.23	2.14	2.15	2.23		2.15
비상업 환율	2.66	1.60		2.2	2.2	2.2	2.2		

資料: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資料 91-02」, p. 22,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 p. 95에서 재인용; 한국은행, 「1991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2. 8).

1970년대 초반 이후 북한 경제는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그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무리한 重工業 위주의 經濟開發戰略은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고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농업 및 경공업부문의 낙후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북한은 시장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閉鎖經濟를 고수한 결과 規模의 經濟를 확보하지 못하고, 國際的分業을 통한 기술·정보·자본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도 배제되었다. 이로 인한 기술의 낙후와 産業施設의 노후화는 國際競爭力의 약화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북한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⁹⁾ 북한 경제는 체제의 속성상 垂

8) 公正換率은 대체로 루블貨의 對西方貨幣 公正換율을 매개로 결정되며, 대외적으로 國民所得을 발표할 때 적용된다. 貿易換率은 외국과의 貿易去來에서 사용되는 환율로 무역은행에서 수시로 발표한다. 위의 책, p. 50.

9) 홍승기 외, 「남북한 경제협력과 해외합작투자 방안연구」, 統一院, 「北韓·統一研究論文集」, pp. 204~205; 제일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과 기업의 대응전략」(서울: 제일경제연구소, 1991), pp. 18~19.

直的이고 官僚的인 統制에 의해 운영되므로 經濟的 合理性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치적 목적의 대형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GNP의 20%를 상회하는 軍費支出은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¹⁰⁾

〈表-3〉 北韓의 軍事費

	1986	1987	1988	1989	1990
군사비(억달러)	39.3	42.2	44.2	44.9	49.6
군사비/GNP(%)	22.7	21.8	21.5	21.3	21.5

資料: 統一院,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

그 결과 북한 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현재 산업 전반에 걸친 生産性 저하 및 생산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생산 기술과 장비의 낙후를 勞動力 착취로 만회하려 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消費慾求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全般的인 生産性 저하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經濟成長率은 3% 수준으로 이는 인구증가율¹¹⁾을 감안할 때 거의 정체상태라고 할 수 있다.

10) 1987~91년 기간중 북한의 武器輸入額은 46억달러로 GNP의 2.0%에 달하고 있다. 동 기간중 남한의 무기수입액은 36억달러로 GNP의 0.3%였으며, 1989년 國防費는 GNP의 4.3%였다. *The Economist*, June 20, 1991, p. 24.

11) 1980년대에 1.7%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1989년 이후 1.8%를 초과하였다. Nicholas Eberstadt,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 Trends and Implications,"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pp. 248~249.

북한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消費財 生産增大와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地方豫算制를 도입하였고, 국가예산을 中央豫算과 地方豫算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 북한은 각 기업에 獨立採算制 도입, 노동자 賃金引上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 억제하여 왔던 農民市場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生必需品 부족현상을 해소하려 하였으며,¹²⁾ 서방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78년에 시작된 제2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은 生産性 향상과 老朽施設의 대체를 위한 과학·기술의 향상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 輕工業革命의 기치 아래 「8·3인민소비품 생산확대운동」을 실시하였고, 각급 단위의 生産計劃과 지역단위의 直販賣를 허용하는 등 중앙의 감독기능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당국은 企業體 조직의 연합화, 노동 評價基準의 재검토, 累進的 都給賃金制의 보급 확대, 獨立採算制의 강화, 이윤의 배분과 이용면에서 기업의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북한이 서방에서 도입한 外債는 北韓産 工產品의 輸出競爭力 결여와 석유과동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광물의 價格下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이 줄어들게 되

12) 海外投資研究所,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pp. 11~12.

자 償還이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북한은 1975년 이후 外債元 利金 상환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1987년 西方의 채권은행 단은 북한을 채무이행 불능국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까지 북한은 만성적인 貿易赤字로 채무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외화부족으로 인해 원료·원자재·에너지 등의 수입 도 어려운 실정이다. 外債問題는 북한이 西方國과의 경제관계 를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은 外資導入을 통한 경제활성화 시도가 실패하자 1984 년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없는 合作投資를 유치하기 위해 「합 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합영법」은 투자조건, 果實送金 허용범위, 合營會社의 의사결정 방법 등이 불확실하고, 合營會社 설립과 해체시의 諸規定 등이 미비되어, 북한이 원하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서방국가들은 對北投資를 회피하고 있 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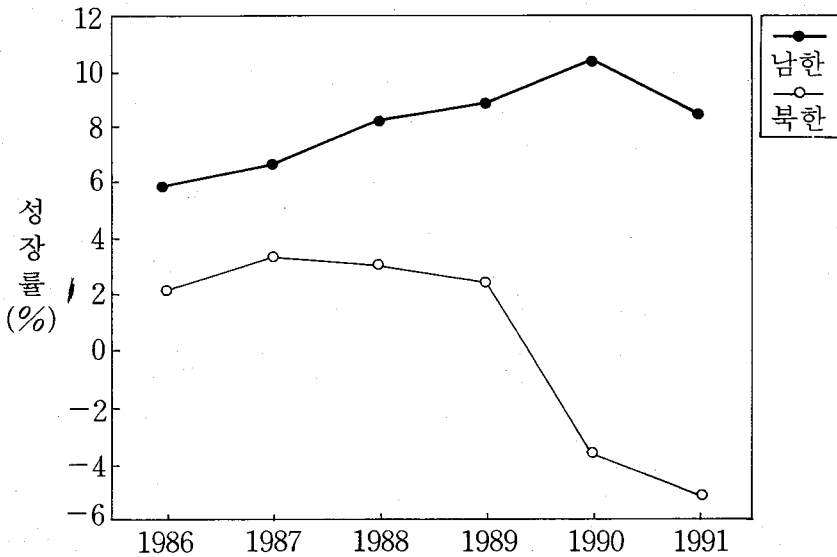
1987년부터 실시된 제3차 7개년계획에서 북한은 社會間接 資本 확충, 생필품 증산, 과학기술 발전, 生産性 증대, 무역확 대 등에 주력하여 經濟沈滯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나, 어느 한 분야에서도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後見者 역할을 하던 구소 련·중국 등이 과거와 같이 북한을 지원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어 현재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

13) 「합영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 65~66.

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經濟成長率은 1990년에는 -3.7% , 1991년에는 -5.3% 를 기록하였으며(〈그림-3〉 참조), 현재 북한 경제는 원료·연료 등의 부족으로 시설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

〈그림-3〉 南北韓 經濟成長率



資料: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서울: 統一院, 1991); 韓國銀行, 「1991년 북한 GNP 추정 결과」(서울: 韓國銀行, 199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만성적인 經濟沈滯,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 심화, 國際的인 孤立을 극복하고 체제붕괴의 가

14) 북한경제연구센터, 「1989~90년 북한경제 개관」, p. 1;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44;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북한 GNP 추정 결과」 참조.

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의 修交交渉을 진행시키면서 미국에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西方國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은 西方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의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2년 5월 북한 政務院 부총리 김달현은 북한이 西方國家의 플랜트 도입으로 얻은 수익을 外債償還에 쓰려고 하였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외채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外國銀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달현은 서울을 방문하여 정부와 財界人士들을 접촉하고 남한과의 적극적인 經濟協力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2년 7월 화폐교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住民들이 일정기준에 따라 새 지폐를 지불받고, 新舊貨幣 교환시 한도액이 넘는 화폐는 중앙은행에 입금시키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新舊貨幣의 交換比率이 1:1이고 發行單位가 불변이므로 貨幣改革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으며, 通貨量을 줄여 인플레이션 및 암시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화폐교환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과 기업소 보유의 화폐를 회수해 遊休資金을 産業資金化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당국자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고심하는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¹⁵⁾

또한 북한은 經濟特區를 지정하고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經濟活性化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들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을 뒷받침할 제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政治的 意志가 요구된다.

2. 變化方向 展望

가. 南 韓

남한은 향후 수 년간 經濟分野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쳐 기존의 가치와 패러다임,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재평가와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남한에서는 성장제일주의 經濟政策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經濟戰略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임금인상, 국민들의 가치관·생활양식의 변

15) 1992년 초 북한 당국은 政治的인 目的으로 과도한 財政支出을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1992년 2월 13일 “전체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시책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표하여, 근로자 평균생활비를 43.3%, 연금 50.7%, 학생 장학금 33%, 비·강냉이 收買價格을 각각 26.2%, 44.8%씩 인상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급증한 財政赤字를 메우기 위해 生必品 價格을 200%, 철도 요금을 300%나 인상한 결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개인이 화폐를 보유하여 私去來에 이용하려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貨幣가 農民市場이나 암시장으로 몰려 地下經濟의 규모가 커지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의 화폐가치를 크게 評價切下시켜 외채상환과 輸入의 조건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15일; 「中央經濟新聞」, 1992년 7월 19일.

화, 人口構造의 변화로 남한의 산업이 國際市場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족 전체의 복지와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統一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풀어가야 하는 남한으로서는 統一構圖에 적합한 經濟戰略과 이의 기반이 될 새로운 이상과 가치체계의 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남한의 經濟構造와 관련하여 성장과 안정이라는 政策目標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수년간 고도성장의 經濟構造속에서 국내저축률을 상회해 왔던 투자는 만성적인 자금부족과 고금리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인플레이·고임금·고금리의 악순환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향후 남한 경제는 이상적인 成長率(6~7%대)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정·국제수지·인플레이·실업률도 조정하여 가는, 안정적인 經濟構造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또한 기술개발과 實物經濟의 성장에 바탕을 둔 成長構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한의 産業構造는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급속히 변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선진 후기산업사회를 향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남한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산업, 특히 農·林·漁業 취업인구와 農·林·漁業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증할 것이다. 특히 就業構造나 생산량 면에서 볼 때 2000년대

에 전체 취업자에 대한 農業人口의 비중은 현재의 수준과 비교하여 절반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4〉 南韓의 産業別 就業構造의 變化展望

(단위: 명, %)

	노동력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90	1,848만7천명	18.3	27.3	54.4
1995	2,072만6천명	13.8	28.9	57.3
2000	2,278만6천명	9.5	28.8	61.7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21世紀 作業 院內參考資料」, p. 5.

〈表-5〉 南韓의 産業別 就業構造의 變化展望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SOC 및 기타
1990	9.1	29.6 29.2	61.3
2000	4.5	32.1 32.0	63.4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21世紀 作業 院內參考資料」, p. 9.

향후 남한의 産業이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製造業分野에서는 섬유·의류·신발 등 勞動集約的 産業의 비중이 계속 감소되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말 정치적 자유화 분위기에 따른 임금상승의 결과 이 분야의 많은 기업들은 競爭力을 잃고 도산하거나 생존을 위해 자동화나 해외이전 등 經營合理化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이 주류를 이루던 분야 중에는 최근 「3D」(difficult, dangerous, dirty) 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 분야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표적 3D 업종인 염색·도금·열처리·주물·단조·기계 등 6개 분야의 中小企業에 대해 해외투자나 기술제휴가 없이도 海外人力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⁶⁾ 그러나 장기적으로 低賃金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競爭力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결국 한국의 賃金水準에 맞는 서비스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생산분야가 확대되고 勞動集約的 分野와 3D 업종의 인력이 재교육되어 여기에 흡수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남한의 産業戰略은 環境保護를 위한 국제적 규제나 개발도상국의 공해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이 강화되는 추세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한 構造調整도 계속될 것이며, 특정 산업이 시장에서 退出(exit)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⁷⁾ 또 環境保護와 관련된 연구개발·설비투자가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투자 혹은 특정 원료에 대한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여 競爭力을 상실하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에는 규제대상물질인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대체물질을 수입 혹은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追加費用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環境分野는 새롭게 주요 산업으로 급성장할 수 있

16) 「中央經濟新聞」, 1992년 6월 9일.

17) 현재까지 國際市場에서 環境問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는 포경, 유자망 어업, 모피산업 등을 들 수 있다.

는 潛在力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環境産業을 國家戰略産業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環境오염 방지시설 및 청정기술 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금 감면폭을 확대할 방침이고, 再生産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남한은 競爭力있는 環境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環境保護 움직임에 편승한 海外進出의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環境問題와도 관련이 있겠으나, 석유화학·철강·시멘트·비철 금속 등 중화학 공업, 제지·염색·요업 등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分野의 기업들은 향후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실용화,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장설비의 개선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남한의 産業部門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1975년에 전체 에너지소비의 38.4%였던 것이 1991년에는 50.8%로 증가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産業部門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29~32% 수준임을 감안하면 남한의 산업은 에너지소비 구조면에 있어서 지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상태로는 국내 에너지源의 供給量이 미미하고 수입의 비중이 큰 남한으

18) 「中央經濟新聞」, 1992년 6월 9일.

19) 남한은 오일쇼크 이후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原油價格이 하락하면서 原油의 사용은 다시 급증하였다. 1991년 GNP 1천달러 생산을 위한 에너지양은 0.66톤으로 일본의 0.33톤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된다. 1989년도 기준으로 GNP 1천달러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양(단위 t)은 南韓 0.59, 美國 0.43, 日本 0.26, 獨逸 0.39, 프랑스 0.37, 이태리 0.32, 英國 0.40 이다. 「朝鮮日報」, 1992년 6월 28일.

로서는 國際競爭力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남한의 産業構造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産業의 成長이 둔화되면서 점차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은 남한상품이 國際市場에서 계속 경쟁할 수 있는 競爭力을 키워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위에 언급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의 産業發展構造는 1960년대에는 勞動 혹은 그 외의 生産要素(factor-driven)를 바탕으로, 1970년대에는 대규모 投資(investment-driven)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競爭戰略기조는 소품종 대량생산이었으며, 대부분의 남한상품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注文者商標附着(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방식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했다.²⁰⁾

그러나 이제 製造業分野의 양적 팽창에 의한 경제성장은 한계에 달하였으며, 賃金과 換率의 상승으로 인해 國際市場에서 더 이상 가격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남한은 상품이나 工程의 革新(innovation-driven)을 통한 産業發展段階로의 전환기에 있으며, 앞으로 상품의 차등화에 의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쟁전략을 수정해 가게 될 것이다.²¹⁾

20) 그러나 여타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은 大企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대규모 생산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나름대로 고유 브랜드, 국제적 마케팅 채널을 구축한 것이 사실이다.

21)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pp. 685~690.

위와 같은 변화의 핵심은 財閥企業이 연관성없는 각종 분야에 무절제하게 참여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전문화된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서 고유브랜드를 개발하며, 生産技術을 완벽히 습득하여, 여기에 마케팅 조직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業種專門化를 이루는 것이다. 생산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부품·기계산업을 육성하여 핵심부품·工程의 輸入依存度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 기계·부품산업이 육성되지 못하면 남한은 新商品群의 개발에 필요한 공정기술에서 항상 先進國에 뒤지게 되고 중간재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향후 남한에서는 勞動集約的인 製造業分野는 조정하면서 知識·技術集約的 分野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설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民間企業이 중심이 되겠지만, 政府도 유망분야를 선별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經濟成長을 주도하게 될 주요 분야는 항공기, 소프트웨어, 초고집적반도체, 위성통신·광대역 ISDN 등 정보통신, 고선명TV, 신의약·신농약, 첨단 생산시스템, 정보·전자·에너지 尖端素材 기술, 차세대 자동차기술, 신기능 생물소재기술, 환경공학기술, 신에너지기술, 차세대 원자로기술 등이다.²²⁾

22) 政府는 G7 프로젝트를 통해 2001년까지 이들 분야에 총 3조 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中央經濟新聞」, 1992년 7월 9일.

한편 1980년대부터 정부가 經濟運營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활동의 效率性과 衡平性의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新産業政策」을 놓고 찬반 논쟁이 있었다. 향후 정부는 國內市場에서 경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원칙적으로 기업활동에의 직접간여를 지양하겠지만, 재벌의 비관련분야 다각화와 所有集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를 계속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南韓 經濟에서 재벌의 비중은 약화되고 財閥企業들은 소유의 분산, 소유·경영의 분리 등을 통해 國民企業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개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블럭화 경향, 地域經濟圈 형성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의 成長潛在力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國民福祉 증진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 北 韓

지난 3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開放·改革없이 현재의 노선을 고수하려 할 경우, 경제과탄으로 인해 軍備維持能力 상실, 주민들의 불만 고조, 남한과의 격차 심화 등으로 체제의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承繼라는 맥락에서

경제난이 계속되면 이는 그들의 政權基盤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서 對外開放과 經濟改革을 추진할 경우 이 또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등으로 인하여 북한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經濟危機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外的으로는 舊蘇聯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市場經濟로 전환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에 의존하여 현 경제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內的으로는 북한의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計劃經濟運營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北韓 經濟가 아래와 같은 세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칠 것으로 상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중국과 러시아연방의 經濟改革事例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社會主義 國家들이 역사적 환경이 다르고 정치·사회적 제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經濟體制는 유사한 理念과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국가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改革措置들은 計劃經濟가 市場經濟로 이행해 가는 연속선상의 각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공통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 개혁의 先行事例은 북한에서 經濟改革이 실시될 경우 단계적으로 해결되어

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 될 것이다.²³⁾

(1) 制限된 對外經濟開放段階

현재 북한 당국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체제의 維持·強化이며 이를 위한 급선무는 경제난의 타개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生産性 향상과 성장을 이루려면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없이는 불가능한데, 이는 중·단기적으로는 援助性 外資(국제기구의 원조, 일본의 배상금 등)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外貨 획득의 방법, 즉 輸出없이는 어렵다. 또 생산성 저하에 따른 식량·에너지·생활품부족은 輸入需要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무역에서 國際價格·硬貨決濟를 요구함에 따라 外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輸出을 증대하는 수 밖에 없다. 북한 당국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미 技術革新, 무역·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강

23) 현재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러한 體制轉換 過程은 기존의 어떠한 經濟發展理論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체제변화의 구체적인 方向과 日程은 일반화된 이론에 입각하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現實의 限界點을 고려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체제변화 事例研究를 토대로 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조하여 왔다.

이 단계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주체사상」이나 「자력갱생」 등 체제의 基本理念을 유지하고 가격체제나 中央統制的 計劃經濟의 틀은 수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對外開放과 分權化를 추진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生産性的의 급속한 저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 부터 經濟政策이나 경제관리체제의 부분적인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제한적인 對外開放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1984년에는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²⁴⁾ 또 독립채산제, 「농민시장」, 「인민소비재 생산운동」, 능률임금제도 등을 실시하여 自律性을 높이고 개인의 동기유인을 다소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하던 外資誘致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北韓 經濟는 현재 악화일로에 있다. 그 이유는 대외 신용도의 저조, 시장의 협소성, 經濟體制의 경직성 등 열악한

24) 북한은 「합영법」 제정 이후 그 후속조치로서 1985년 3월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 소득세법」을 제정하였고, 同年 5월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과 「외국인소득세법세칙」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1986년 「조선 국제합영 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89년에는 「합영공업부」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投資與件과 불확실한 수익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外國企業의 투자동기를 유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합영법」을 통한 북한의 開放政策은 가격체제나 기업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改革이 없었고 분권화 및 자율화 허용 정도가 워낙 제한되어 경제체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合營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합영법」을 통한 투자유치·경제활성화에 실패하고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북한은 다시 制限的인 開放政策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즉 북한은 여타 지역과 격리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外國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고 輸出産業을 육성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를 채택하여 선봉·나진 일대 621km²를 「자유경제무역지역」으로, 청진을 自由港으로 공식 지정하였다.²⁵⁾ 이어서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는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을 채택하였다.²⁶⁾ 이는 「합영법」만으로는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보다 좀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外國企業의 經濟特區 진출을 촉진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25) 「內外通信」, 第777號 (1992. 1. 10).

26) 上記 設法의 全文은 「남북교류협력동향」 (1992. 10. 1~10. 31) 참조.

인다.²⁷⁾

「외국인 투자법」이 「합영법」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법」은 「합영법」과는 달리 특구내에서는 外國人의 100% 출자를 허용하였고, 外國人企業이 토지를 50년까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한 토지는 임대기간동안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合作企業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추었고, 所得稅 감면 기간도 연장하였다. 「합영법」의 경우 영업시작 후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3년후에도 순소득이 적을 경우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利潤이 나는 해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법」은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조선동포”의 투자를 허용하여 南韓企業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²⁸⁾

27) 중국에서의 經濟改革은 무엇보다도 對外經濟 部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9년 7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공포한 이래 「외자기업소득세법」, 「외자기업법」, 「외국인투자장려규정」 등을 제정하여 資本과 技術 導入 및 外國人 투자유치를 위한 節次와 稅制上의 우대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4개의 經濟特區를 설정하였다. 또한 1984년 4월 대련과 천진을 포함한 14개 개방도시와 해남도를 개방하였고, 1985년 1월에는 장강(양자강)과 주강의 두 三角洲를 개방하였다. 이어서 요동반도, 산둥반도, 진황도 등 발해연안지역을 포괄하는 經濟開放地區를 건설하였다.

28)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서는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1992. 10. 1~10. 31) 참조.

그러나 「합영법」이 갖고 있는 問題點으로 지적되어 온 많은 사항들이 「외국인 투자법」에서도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즉 「외국인 투자법」에도 原價計算, 필요경비 인정, 재고 자산평가, 감가상각, 외환환차손익평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經營管理面에서도 「합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 滿場一致 의사결정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법」하에서도 外國企業은 북한의 勤勞者를 직접 채용할 수 없고 북한의 勞動機關을 통해서만 勞動契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合營會社가 노동자의 고용·봉급 등의 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勞動市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투자법」은 특구에서 생산된 상품은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합작기업의 생산품에 의해서 國內價格體系가 영향받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특구의 설치와 「외국인 투자법」의 제정이 中央統制的 經濟管理나 가격결정 등으로 규정되는 북한 經濟運營體制의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과거보다 투자의 조건을 다소 유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는 競爭價格과 노동계약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경제특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⁹⁾

29) 오용석, 「中國經濟特區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pp. 44~46.

북한에서 최초로 운영될 경제특구로 가장 유력한 지역은 나진·선봉지역인데, 북한은 여기에 合作·直接投資의 형태로 자본을 도입, 工業中心地로 발전시키고 수출공단화하여 대외 진출의 기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³⁰⁾ UNDP의 두 만강개발사업 對象地域이기도 한 나진·선봉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치적인 위험부담이 덜하다는 利點이 있다. 경제특구는 다른 지역(해주·남포·신의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당분간 북한은 이들 경제특구와 「외국인 투자법」을 기초로 통제된 開放을 시도하여 외화와 기술만을 도입하고,³¹⁾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體制維持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이 극히 제한된 開放政策만으로는 經濟活性化에 필요한 투자유치나 생산성제고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開放政策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經濟改革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經濟改革段階

이 단계에서 북한은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의 틀은 유지하되

30)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라진,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 (평양, 1992. 4) 참조.

31) 연하청, “북한의 개방전망과 남북한 경제협력,”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p. 21.

부분적으로 市場機構를 도입하여 경쟁가격이 계획가격과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동시장에도 契約制를 도입하는 등 改革을 실시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또 집단농장의 해체와 책임생산제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등 경제운영의 分權化와 제한된 私營化가 진행될 것이다. 북한 경제는 이러한 개혁정책을 통해 중국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經濟改革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前段階에서 북한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주요한 조치들도 중국의 改革政策을 모방·수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형 改革政策이 經濟成長과 현 정치체제의 유지를 모두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록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에 바탕을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중국보다 改革의 범위와 폭을 제한하려 하겠지만³²⁾ 북한의 經濟改革은 결국 「중국식 개혁」의 亞流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과정은 북한 經濟改革의 樣相을 전망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32)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2월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鄧小平의 復權과 함께 중국 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改革·開放의 政策路線을 채택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鄧小平도 ① 社會主義路線의 견지, ② 無產階級獨裁의 강화, ③ 共產黨 領導 견지,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思想의 견지 등을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90.

중국의 經濟改革은 지난 14년 동안 단계적으로 세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1978년 12월부터 1984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혁정책은 農業部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4년 10월부터 199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도시지역 기업소의 개혁에 중점을 둔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92년 1월부터는 보다 진전된 社會主義 市場經濟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農業部門의 개혁은 1978년부터 시작되어 1983년에는 集團農場인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個人農에 의한 生産責任制가 도입되었다. 또한 중국은 가격, 농업경영조직,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農產物 市場 등을 설립하여 농업부문의 시장경제적 기반을 확립하였다.³³⁾

都市地域의 개혁은 국영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주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중국은 이를 위해 工場 責任制와 勞動契約制 등을 도입하였다. 企業의 自律權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주식제 개혁이 실시되었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株式制度가 확산되었다. 기업개혁에 이어서 상품의 가치와 수요관계를 반영하는 價格制度도 개혁되었다. 價格體制는 정부가 결정하는 指定價格, 정부가 최고·최저가격을 확정하여 시장의 需給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동이 가능한 國家 指導價格, 시장기능에 따르는 自由價格 등으로 3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金融體制에 대한 개혁도 단행하여 중앙은행과

3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北方經濟協力の 課題와 展望」(서울: 對外經濟研究院, 1991) pp. 11~12.

특정 부문별 專業銀行들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短期金融市場과 證券市場이 개설되는 등 資本市場의 육성을 위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外資導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통화기금(IMF, 1980)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1986)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중국 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북한이 실시하는 經濟改革政策도 대체로 농업개혁, 기업소 개혁, 가격 개혁, 그리고 무역개방조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農業部門에서 북한은 1987년 「자유상설농민시장」 등을 통해 개인의 이윤동기를 부여함으로써 農業生産性を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향후 북한은 經濟改革段階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生産責任制를 적용하고, 集團化·國營化의 수준을 낮추어 가면서 市場價格을 도입하는 등 농업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農業改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궁극적으로 집단농장이 해체되고 個人農에 의한 생산책임제가 도입될 것이다. 또 가격, 유통구조가 개혁되어 농업부문의 市場基盤이 확립될 것이다.

工業部門의 개혁에 있어서 북한은 소비재·생활품을 생산하는 輕工業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계속 消費財 生産增大를 위해 가내작업반·부업반 확대 조직, 직판제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진하였다. 따라서 經濟改革段階에서 북한은 독립채산제, 自律生産·販賣 등을 더욱 확대 허용하고, 공장책임제와 勞動契約制를

특구를 중심으로 실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공업부문의 성공적인 改革은 궁극적으로 국영기업의 부분적인 民營化 措置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가격체제는 가격결정에 대한 市場機構의 도입에 따라 市場價格과 計劃價格이 공존하는 형태로 될 것이다. 社會主義經濟의 개혁은 기존의 불합리한 價格體制下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격개혁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은 價格改革을 통해 ① 각 상품간의 價格比 조정, ② 價格管理方式의 다양화(국가결정과 시장조절 가격체제) ③ 가격결정 권한의 分散化(기업단위로의 가격결정 권한 이행) 등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價格改革을 통해 국내의 가격이 경제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게 되면, 북한은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각국과의 경제력 격차나 무역수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換率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개혁의 핵심목표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 貿易開放措置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對外貿易權의 이양·분산 등 무역담당기관의 自主權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중국에서와 같이 貿易部門에서 「經營請負責任制」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改革措置들이 실행되면 북한의 經濟特區가 활성화되어 무역량, 외국자본·기술의 도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合營·合作도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특구

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³⁴⁾ 그러나 經濟改革段階에서 북한은 경제개혁 실시에 따른 물가상승, 輸入 및 外債 增加, 지역간 不均衡 深化, 그리고 경영합리화 및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도산·실업 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1992년에 들어 鄧小平의 리더쉽하에 개혁·개방이 더욱 급속히 추진되어, 사실상 共產主義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北京政府와 시장경제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上海나 경제특구간에 일종의 政經分離現象이, 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경제체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이중적 체제의 유지가 가능한 것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 강력한 지방세력이 존재하는 分權的 傳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중국과 같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政經分離 양상이나 「이중 경제체제」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特區만으로는 북한의 경제성장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

34) 중국은 開放·改革政策과 경제특구의 성공으로 1978년 市場經濟的 要素를 도입한 이래 1991년까지의 10여년간 연평균 8.7%에 달하는 經濟成長을 이루었고, 국민총생산을 1983년 1천억달러에서 1992년에는 4천억달러로 증가시키면서 국민들의 衣·食·住 등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고도성장은 1970년대 말부터 연평균 10%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을 유지해 온 경제특구에 기초하고 있다. 박춘삼, “중국경제 개혁의 현황과 전망,” 「北方經濟」(1992년 8월호), p. 34.

한은 開放·改革을 계속 확대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³⁴⁾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협소한 영토로 인해 장기간 동안 開放·改革의 파급효과가 격리된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經濟改革段階에서 북한 경제에는 「개방·개혁·투자유치 → 생산성 제고·수출증대·외화획득·성장 → 재투자·성장장애요인 제거 → 개방·개혁 확대」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市場經濟的인 改革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면 이는 다시 성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며,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체제가 市場經濟化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3) 市場經濟段階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計劃經濟內에서 市場機構의 도입에 바탕을 둔 개혁과 성장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면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그 경제체제는 市場經濟化의 압력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다시 計劃經濟로 돌아가려는 의도로 국영화·집단화·중앙통제의 수준을 높이려 한다면 改革·開放 이후에 향상된 生産性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경제는 급격히 침체될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정치·경제적인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政治勢力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계속되는 개방·개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中央統制的 計劃經濟를 포

기하면서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북한이 최근 폴란드나 舊蘇聯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經濟改革措置들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구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政治體制의 崩壞나 轉換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도 정치체제의 변화없이 經濟體制가 시장경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政權을 고수하려는 세력들이 무력탄압을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기간 잔존할 것이지만, 탄압이 經濟體制 轉換의 연쇄반응을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經濟改革措置의 추진이 어떠한 정치체제하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한다.

북한이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위해 실시하게 될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구동유럽 국가들이나 옐친집권 이후 러시아가 취해 온 조치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舊蘇聯 정권의 붕괴 원인은 社會主義的 統制經濟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식량이나 기타 消費財·生必品の 극심한 부족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경제적 실패가 점차 체제의 正統性을 잠식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공화국은 中央統制經濟를 市場經濟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격자유화, 상업활동 자유화, 국영기업 민영화·사영화 등 급진적인 경제개혁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러시아연방은 1992년 초 일부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價格統制를 해제하고, 商業活動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으며, 루블貨의 兌換性 확보를 위해 單一變動 換率體制를 채택하였다.

가격자유화와 더불어 市場經濟體制의 확립을 위한 중장기 構造轉換政策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영기업·국유재산의 전면적인 民營化·私有化 作業이 시작되었으며,³⁵⁾ 현재 2단계가 추진되고 있다. 이 작업이 추진되면 1995년까지 상당수의 주택과 토지가 민간에 불하되고, 전체 국영기업의 절반 정도가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³⁶⁾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위해 北韓도 가격개혁과 민영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은 단계적인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財貨와 用役의 가격이 계획당국이 아닌 市場機構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다. 물론 특정 분야나 품목의 가격 결정권은 예외로 정부가 유보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商品價格이 市場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

35) 러시아연방의 사유화과정은 1992년 초 價格自由化를 실시할 때 러시아 연방 의회가 도매업, 소매업, 경공업, 공공급식, 서비스분야의 私有化를 승인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사유화된 國營企業의 數는 年初 200개에서 4월 초에 3,000개로 늘어났다. V. Popov, "1992년 러시아경제의 현황과 예측," 「러시아 연구」 (1992년 7월호), p. 23.

36) 러시아연방 정부는 1992년 7월 1일 國營企業의 私有化를 중심으로 한 제2단계 「경제개혁 확대·심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改革案에 의하면 러시아연방은 무역 및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기업과 소규모 기업들을 경매 및 입찰방식에 의해 매각하며, 대기기업과 중소기업을 株式會社로 전환하여 株式을 국민에게 매각하거나 무상분배한다는 것이다. 朴濟勳,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 38.

둘째, 生産手段의 소유면에 있어서도 북한은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民營化를 실시할 것이다. 북한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영기업을 매각하거나, 株式會社化 혹은 有限會社化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 회사들의 株式을 고용자들에 분배하거나 국민들에게 株式을 매입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에 공매할 것이다. 民營化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投資制限도 감소되어 외국자본이 民營化 企業을 매입하거나 부실 국영기업과 外國投資企業이 병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동시에 資本市場의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영기업들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株式市場을 비롯한 資本市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³⁷⁾

한편 북한이 市場經濟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될 과제는 전면적인 價格自由化로 인한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방지하고, 民營化 등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失業을 줄이면서, 失業者의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투자를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다.

37) 초기의 주식시장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1991년 上海·심천에 株式市場을 개설한 이후 주식 거래가 급증하였고, 수십 여종에 불과한 상장주식의 가격은 폭등하였다. 국민들은 株式市場·資本主義制度에 대한 학습에 열을 올리고 일확천금을 위해 주식투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주식투자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사설 학원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人民日報」는 1992년에 전인구의 20% 정도가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中央經濟新聞」, 1992년 6월 28일.

러시아연방에서는 價格自由化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1992년 1월중에 물가가 350%나 급등하였고 연 1,000% 수준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³⁸⁾ 그 이유는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구조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며, 生産者의 대부분이 市場支配權을 가지는 獨占形態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산하는 企業과 失業者의 수가 증가하여, 1992년 상반기 중 企業 및 政府機關에서 약 100만명이 실직하였고, 분기 중 40만명이 추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³⁹⁾ 그러나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失業問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市場經濟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産業生産力이 제고되고 競爭體制를 갖춘 市場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민영화된 기업의 합리화 과정에서는 많은 생산시설이 폐쇄되고 대규모 失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社會補助性 經費를 조달하기 위해서 북한은 많은 財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역시 대규모의 産業投資

38) *Korea Herald*, July 2, 1992; 製造業分野의 생산은 1992년 초 7개월 동안 전년 同期間 대비 14%나 감소하였다. 최병희, “러시아연방의 1992년 상반기 사회·경제상황,” 『北方經濟』 (1992년 8월호), p. 80.

39) “1992년 상반기 러시아 경제(1~6월),” 『러시아研究』 (1992년 9월호), p. 9.

로 失業者들을 흡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전면적인 經濟改革을 실시할 경우 價格自由化, 貨幣의 兌換性 확보 및 國營기업의 민영·사유화 조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정치체제가 多元化되며, 경제운영면에서는 黨의 개입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는 계급분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利益集團이 출현하는 多元主義的 社會文化가 형성되는 과정과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第Ⅳ章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 推進方案

1. 基本方向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앞에서 전망한 北韓 經濟의 변화과정을 고려하여 북한이 經濟活性化를 위해 시행하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남한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남북한은 交流·協力을 통하여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남북 경제체제간의 異質性을 해소하고, 相互補完的 成長을 도모하며, 兩經濟가 통합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예상하여 이를 공동체형성 과정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漸進的으로 양자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가면서 궁극적인 統一에 따르는 충격과 비용을 最小化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경제공동체는 廣義의 概念으로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인 활발한 經濟交流·協力을 바탕으로 部門別 統合과 상호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共同市場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民族經濟의 균형잡힌 발전과 공동이익 확보를 위하여 협력·조정하며, 궁극적으로 相互 市場을 개방하여 商品 및 生産要素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일단 통합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自由貿易地帶, 關稅同盟, 共同市場 그리고 經濟同盟 등의 단계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남북한과 같이 경제 발전수준이나 체제가 다른 경제간의 통합과정은 市場經濟體制間에 이루어지는 統合過程에서 나타나지 않는 特殊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形成過程을 크게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와 경제공동체 형성단계로 구분하며,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에서는 남북간 교역과 합작,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경제공동체 형성단계에서는 産業構造 調整, 南北聯合 推進, 共同市場 推進 등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은 統合推進過程의 각 단계와 분야들, 그리고 북한 경제 내부의 변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意義가 있다.

북한은 현재 정치·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經濟活性化를 위한 제한적인 開放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으며, 남북한 경제관계는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에 있다. 남한의 政策 目標은 첫째,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둘째, 북한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셋째, 兩 經濟의 相互依存度를 심화시켜 북한의 開放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관계는 경제체제의 차이와 政治·

軍事的 對立으로 인해 아직 間接交易 방식의 物資交流가 대부분이고, 合作투자나 技術협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은 우선 직교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점차 合作投資 및 資源의 共同開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 단계를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실습의 기회로 삼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産業構造 調整段階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북한은 현재의 중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經濟成長을 위한 開放·改革政策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특정 부문이나 품목별 통합을 추진하고, 産業構造 전반에 걸친 협의·조정을 통해 남북한의 부존자원과 생산요소의 이용에 있어서 經濟性과 相互補完性 극대화를 목표로 공동 노력한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을 주도하는 기구는 「남북한 석탄·철강 공동체」,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 및 「산업구조조정협의회」 등이다.

南北聯合 推進段階에서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하는 「남북연합」을 추진하여 「정상회담」, 「각료회의」, 「평의회」를 구성하고, 前段階의 「남북한 석탄·철강 공동체」, 「남북한 원자력 공동체」, 「산업구조조정협의회」는 남북연합의 기구로 편입하여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生産手段의 民營化,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 철폐, 전면적 價格改革의 실시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市場經濟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단

계에서 남한의 政策 目標은 북한의 經濟改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同質化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한은 전면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거나 關稅同盟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공동체 형성의 마지막 단계인 共同市場 推進期에서 남북한은 單一經濟圈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實物經濟의 통합을 목표로 共同市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南北聯合 機構의 역할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고,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共同市場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共同市場 形成過程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완성된 후 남북한은 단일 中央銀行 설립, 貨幣 단일화 등을 통해 經濟同盟을 완성하고, 사회정책까지 통합하면 완전한 經濟統合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政治統合을 의미한다.

2. 細部 推進方案

가. 經濟共同體 形成 準備段階

이 단계에서 남한의 政策目標은 남북간의 교역·합작·공동개

발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相互依存度를 심화하여 남북간 경제관계를 制度化하며 북한의 開放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은 前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력갱생」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中央統制的 計劃經濟의 기본틀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지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分權化와 기업의 자율성 및 개인의 물질적 동기 유인을 허용할 것이다. 또 엄격히 통제된 對外開放을 통해서 外國資本과 기술을 유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제된 開放政策으로 북한은 경제활성화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이 시도하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對北經濟協力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對北交流·協力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나, 統一費用을 분담·분산하는 차원에서 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利潤動機를 무시하고 對北經濟交流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제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교류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效率性を 저하시키고 産業構造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對北交流·協力 유인과 민간기업의 利潤追求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준비단계에서 남한의 政策目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交易擴大, 합작사업 추진, 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交易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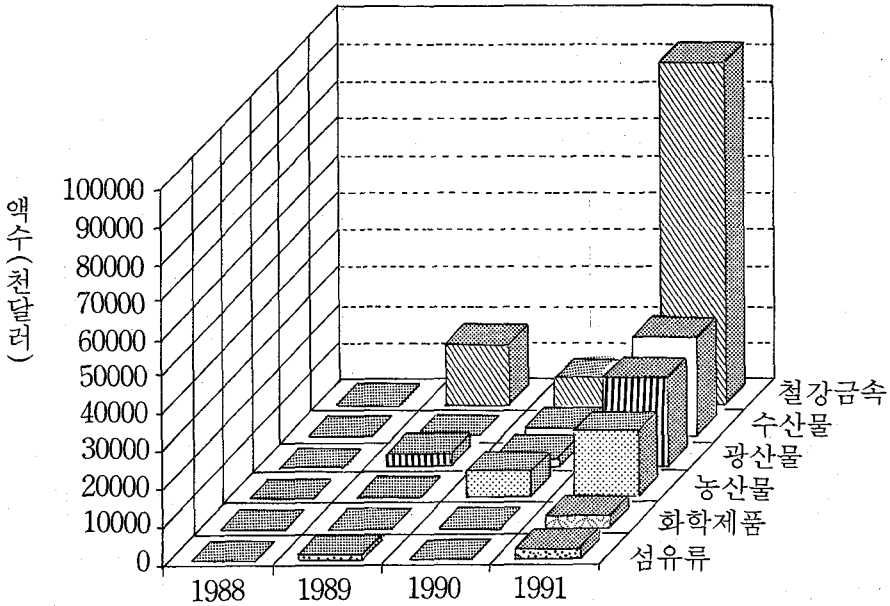
현재 南北交易上의 문제점은 間接交易 중심의 거래형태에서 오는 비경제성과 불이익이다. 최초의 남북 直交易은 1991년 7월 27일 남한의 천지무역과 북한의 금강산무역간에 북한의 무연탄과 시멘트를 남한의 쌀과 物物交換하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성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直交易은 3건(8백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북간 경제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직교역의 확대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直交易을 擴大를 위해서는 교역품목 선정과 交易障礙要因 제거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여건 조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 交易品目 選定

남북한 교역품목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남한의 주요 搬入品目은 아연피·금피·열연코일·빌레트 등 金屬製品이 압도적이며, 냉동조기·명태·오징어·옥수수·모피·호도 등 農水産物과 무연탄·전기동·철광석 등 鑛物도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 남한의 주요 搬出品目은 폴리에틸렌, PS수지, 플라스틱가소제 등 化學製品과 纖維類이며, 칼라 TV 등 耐久消費財도 상당량을 반출하고 있다(<그림-4>, <그림-5> 참조).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교역품목의 구조에 근거하여 교역을 추진

하는 것이 남북간 交易量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4〉 對北搬入 承認品目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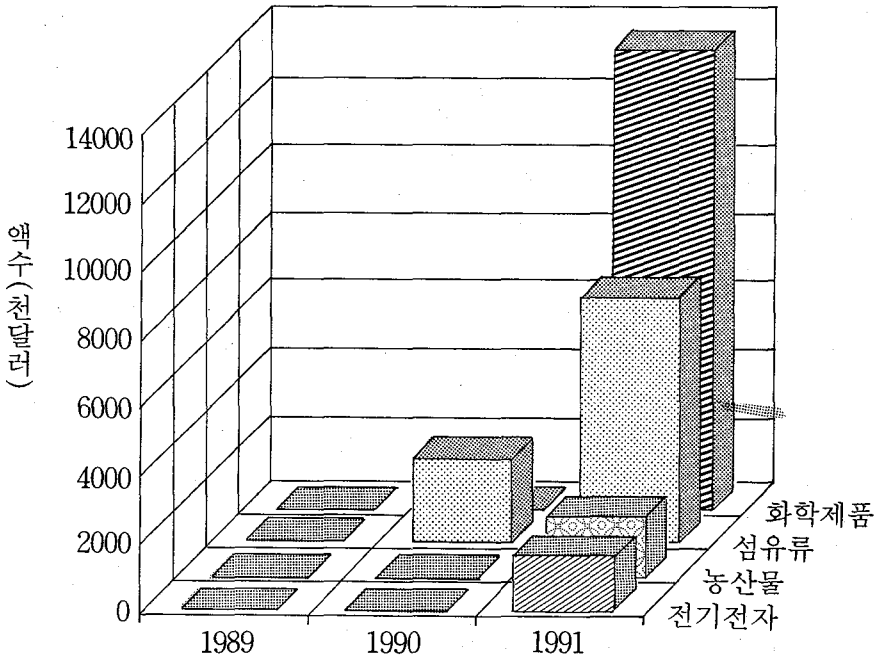


資料: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7호 (1992. 1. 1~1. 31), pp. 46~47.

보다 구체적인 交易品目은 북한의 수출입 상품 구조, 生産單價, 무역특화지수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국가중에서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남한과 産業構造가 유사한 일본이나 여타 OECD국가들과 북한과의 交易품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 交易有望品目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對北搬出 유망품목은 북한의 對

日輸入이 1억엔 이상인 품목이나 북한의 對日平均輸入單價가 남한의 수출단가보다 높은 품목을 들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대북반입 유망품목은 북한의 對日輸出이 1억엔 이상이거나 북한의 對日平均輸出單價가 남한의 평균수입단가보다 낮은 품목을 들 수 있다.¹⁾

〈그림-5〉 對北搬出 承認品目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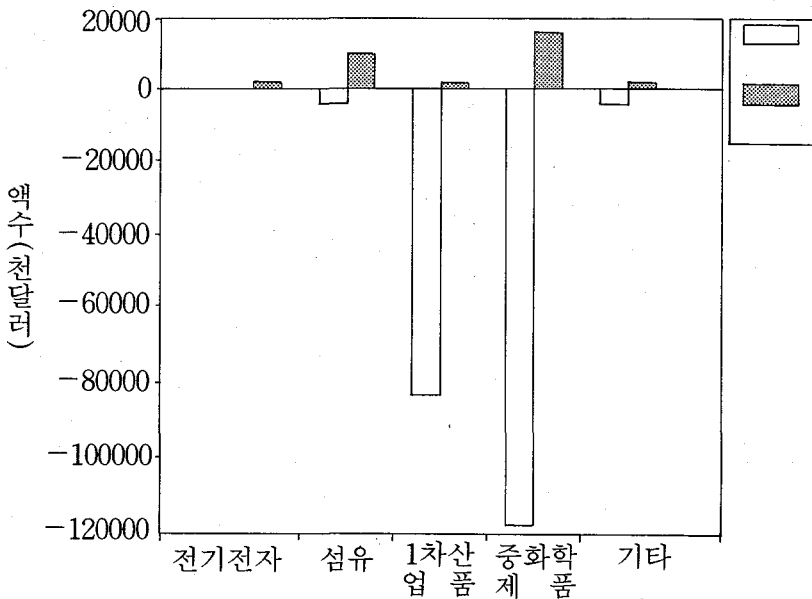


資料: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7 호 (1992. 1. 1~1. 31), p. 48.

1) 韓國貿易協會가 제시한 방법.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交易有望 品目」(서울: 韓國貿易協會, 1991) 참조. KIET는 對北搬入 유망품목으로 북한의 對OECD 수출액이 백만달러 이상이고 남한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품목을, 對北搬出 유망품목으로는 북한의 對OECD 수입이 50만달러 이상이고 남한의 對OECD 수출이 1백만달러 이상인 품목을 잡고 있다. 「中央日報」, 1992년 7월 17일.

위와 같이 남북한의 輸出入 商品構造와 産業構造上的 차이를 분석해 보면, 향후 북한으로부터의 搬入有望品目은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시�크링카, 아연괴, 니켈, 알루미늄괴, 명태, 섬유류, 생사, 모피, 한약재, 옥수수 등 주로 鑛物과 農水産物이다. 搬出有望品目은 철강재, 콘베이어 벨트, 직물류, 소금, 쌀, 감귤, 수산물, 폴리에틸렌, 비누, 양말, 직조기, TV 등 전기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용기계, 섬유직물, 의약품 등이다.²⁾

〈그림-6〉 對北交易 品目 構造(1988~91)



資料: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 7호 (1992. 1. 1~1. 31), pp. 46~48.

2) 자세한 品目은 韓國貿易協會, 「南北韓 交易有望品目」 pp. 6~14; 海外投資研究所,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pp. 86, 147~156 참조.

한편 그 동안 북한은 남북한 物資交流의 방식으로서 원자재 對 원자재, 완제품 對 완제품, 농수산물 對 농수산물의 교류방식을 주장하면서 垂直的 交易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남북교역 품목구조를 보면 對北搬入에 있어서 농수산물·광산물 등 1次産業 製品과 重化學工業 製品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6> 참조).

교역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한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交易品目構造의 균형을 염두에 둔 水平的 交易의 증대 방법을 모색하는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物資 交易이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광석, 아연 등 1차 생산품을 주로 搬入하고 대신에 북한에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용기계 등을 주로 搬出하며, 섬유직물이나 금속제품에서 균형을 이루는 형태의 交易構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나) 制度的·行政的 支援 및 與件 造成

교역이 더욱 확대되려면 남북한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된 清算去來方式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하고, 남북간 거래에 통용되는 共通通貨를 발행하여 清算計定の 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³⁾ 金融協定을 체결하

3) 物物交換方式은 북한의 경화부족을 고려할 때 유리하지만 거래대상품목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다. 대응구매방식은 국내 수출입업자간에 去來情報交換 등 연계조직이 필요하며, 대응구매품목을 물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清算去來方式은 만성적인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무역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海外投資研究所,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p. 153.

여 無利子 외상거래(Swing)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한은 對北貿易에서 흑자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흑자분만큼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상품을 구입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이상의 사항과 상품의 통관·검사, 분쟁처리방법, 경험인원에 대한 自由活動 및 편의보장 등 교역을 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通商協定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체결해야 할 것이다.⁴⁾

남북한은 이미 교역을 위한 輸送路에 대해 인천-남포, 포항-청진, 부산-원산 등의 海路, 경의선 철도, 문산-개성간의 陸路, 그리고 김포-순안간 航路 등의 연결에 합의한 바 있다. 정기적인 수송로의 개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臨時交通路를 이용하며, 陸路보다는 海路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남북간에 운행되는 교통수단, 운행시간, 기술적 문제, 승무원 신변문제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通行協定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남북한은 우편·전화·팩시밀리 등 通信網의 연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간의 交易과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제한된 專用通信網을 구축하고, 점차 일반 通信網의 연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통신망 연결의 방법, 기술적인 문제, 비밀보장, 요금 등을 규정

4) 金世源, “南北合意書의 南北間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實踐課題”(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제1회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1. 4. 24), pp. 19~24 참조.

하는 通信協定을 체결하도록 한다.

남한정부는 南北交易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북한에 搬出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免稅惠澤을 주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와 이에 필요한 제반 과정(원자재·수송·통신 등)에 대해서도 稅金을 감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정부는 또한 정책의 一貫性을 유지하고, 部處間의 불협화음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統一院 주도하에 정부 내 각부처간, 정부와 민간과의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協議體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對北交易의 독점, 과다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南北交易에의 자유방임적인 접근을 당분간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이 南北交易에서 한 분야를 獨占하게 되면 이는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남한의 기업들이 과다경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 對北交易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성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의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情報가 부족하고, 북한에 貿易慣行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南北韓 交易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經濟·産業情報, 기타 資料들이 체계적으로 수집·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교역 정

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 센터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남한의 企業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계기관과 經濟情報의 상호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정부는 對北韓交易의 危險負擔을 분산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같은 基金을 충분히 확보하여 對北交易에서 經濟外的인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을 보전해 주고, 교역으로 이익을 본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금액을 基金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南北交易 活性化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法規의 정비를 조속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對外貿易法 등과 같은 현행 對外去來 關聯法令은 외국과의 거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북한과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현단계에서는 對外去來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交流協力法의 후속 관련법규를 제정하거나 관련법령을 준용 및 보완할 수 있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⁵⁾

關稅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남북교역에 關稅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하였고,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搬入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交易規模가 확대되면 남북간 無關稅 去來가 GATT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반

5) 林陽澤, “第3의 南北韓 統一方案과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 段階別 推進戰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2. 27) 참조.

말이 거세어질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91년 남한산 쌀 5천톤이 북한에 반출되었을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1992년 10월의 韓·美貿易會談에서는 남북교역, 특히 쌀교역문제를 議題化하려 하였다.⁶⁾ 미국은 남북한 교역이 내부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GATT를 통해 內國交易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동서독간 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南北間 去來도 조속히 內國間 去來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직교역이 활성화되고 상호 信賴基盤이 구축되면 남한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外債問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국제경제기구로부터의 資金導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들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經濟活性化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⁷⁾ 또 북한의 수출증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借款保證이나 輸出入 業務代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大韓貿易振興公社의 情報·마케팅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남한의 商社들이 북한의 대외무역을 취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6) 「東亞日報」, 1992년 10월 7일.

7) 만약 북한이 ADB에 가입하게 되면 GNP, 물가, 인구 등에 대한 기초 經濟統計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ADB로부터 開發資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對外開放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合作事業擴大

外貨와 生産能力이 부족한 북한은 현단계에서 외국인의 合作投資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특구·자유무역항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하여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남한의 많은 기업들은 勞動力 不足, 賃金上昇, 地價上昇 등 경영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海外進出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對北投資는 對東歐 및 對東南亞 투자에 비해 언어·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건만 성숙되면 남한의 기업은 對北韓 合作投資에 적극적일 것이다.

남북한 合作事業은 産業構造나 賦存 生産要素의 차이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경우 남한이 資本과 技術을 제공하고 북한이 勞動力이나 資源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은 남한의 기업이 對北投資를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⁸⁾ 따라서 남북한은 자연스러운 合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經濟開放段階에서의 對北投資는 저임금의 장점이 있지만,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투자확대의 障礙要因을 제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북한 노동자의 平均 賃金は 일당 2~3달러, 남한은 9~11달러, 인도네시아는 3.5~5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朝鮮日報」, 1992년 4월 30일.

(가) 合作投資分野 選定

대북투자자는 북한의 合營 現況과 合作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小規模 輕工業 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南北韓 産業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投資分野 선정에는 남북경제회담, 남북교류협력분과위·공동위 및 민간업체간의 접촉 등에서 의견 접근을 본 분야들도 참고가 될 것이다.

1992년 11월까지 「합영법」에 의거하여 실현된 合營事業은 경공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바, 현재와 같은 투자여건하에서의 對北投資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對北投資는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 1990년 7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시한 11개 분야, 83개의 合作 희망분야를 중심으로 合作事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合作 희망분야는 기계, 금속, 화학제품, 요업, 전기·전자, 직물·의류, 기타 生必需品 등 輸入需要가 큰 부문과 광산물 및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가공에 집중되어 있다(〈표-6〉 참조). 한편 북한은 최근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서 첨단기술,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분야의 合作을 장려하고 있다.

〈表-6〉 北韓의 海外投資誘致 希望分野

(단위: 백만달러)

부 문	투 자 대 상	투자규모		과제수
		총투자	해외투자	
1. 광업	동, 흑연, 대리석, 화강암 등	67.1	46.3	5
2. 식품 및 농수산업	건강식품, 수산물가공, 콩기름, 과일 주스 등	32.9	17.1	4
3. 직물 및 의류	견직물, 면직물	293.9	217.2	7
4. 목재 및 목재가공	신발, 의류, 나일론, 테트론 섬유 인조견사 등 합성섬유 합판	3.0	2.5	1
5. 화학제품	페라이트, 향수, 정유, 구연산, 염화비닐, 스틸렌, 에틸벤젠, 가솔소다, 알데히드수지, 무스프탈산등	276.6	139.9	11
6. 유리 및 요업품	고령토, 규조토, 점토, 편암토, 벤토나이트, 유리받침, 유리섬유, 크리스탈 등	55.6	30.4	7
7. 금속산업	아연, 카드뮴, 티타늄, 크롬강, 마그네샤클링카, 전기동, 회토류, 마그네슘 등	156.2	97.4	12
8. 조립금속 품	볼트, 너트	0.8	0.3	1
9. 기계공업	공작기계, 유압기, 연삭기, 절삭기, 산업용재봉틀, 전해	192.1	95.2	8

부 문	투 자 대 상	투자규모		과제수
		총투자	해외투자	
10. 전기·전 자공업	장치, 유압펌프 및 밸브, 연 료펌프 및 분사기 등 배터리, 흑백TV, 전기기구, 전기모터, 컬러TV, 회토류 영구자석, 계전기, 변압기, 엘리베이터, 소형컴퓨터, 계 산기, 녹음기, 냉장고, 양극 성직접회로	334.2	165.1	25
11. 조선	어선건조 및 각종 선박수리	148.9	75.6	2
계		1,561.3	887.0	83

資料: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vestment Pro-
motion Service, *List of Profi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 7); 연하청,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 경제협력」(서울: 대
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 1991), p. 30 참조.

남한은 賃金·地價引上으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분야,
기타 勞動集約的 斜陽産業分野에서부터 대북합작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한이 생산단가를 낮추어서 계속적으로 國際競爭
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合作投資를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는 현재 의류·신
발·완구·직물 등 國際競爭력을 상실하고 있는 분야에 수천만
달러 상당의 資本財가 있는데 남한은 이들을 과감히 북한에
이전하고 자본, 경영기술, 마케팅·유통 노하우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992년 상반기에 北韓進出을 희망하는 남한의 업체는 섬유 업체(봉제의류·완구·침구 등), 신발, 식품공업(통조림·조미료·육포 등), 철강 및 PVC, 피혁공업(가죽가방·오리털가공), 임업(목재채취), 광업(연탄·석재·고령토) 등이 있다. 이중 섬유가 最多數로 25% 수준이고 投資規模는 중화학공업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남북한의 투자희망분야를 종합해 보면, 남북합작은 일차적으로 섬유, 의류, 식품 등 북한에서의 需要가 높고 生産單價面에서 輸出競爭力을 가질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점차 컨테이너, 정밀기계, 기계부품과 같은 中規模의 投資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 화학공업, 운송장비, 자동화기계 설비, 채굴장비, 건설장비, 플랜트 생산, 첨단전자산업, 기타 基幹産業과 같이 大規模 投資를 요하는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 合作立地 選定

合作投資를 위한 立地의 選定은 生産要素의 공급이 최소의 비용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기존의 社會間接資本·基盤施設이 유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북한은 유엔개발기구의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유역의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두만

9) 「中央經濟新聞」, 1991년 7월 31일.

강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開放으로 인한 정치적 「오염」을 最小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유엔개발기구의 豆滿江 開發計劃과는 별개로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에서 두만강 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선봉·나진 일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청진을 自由貿易港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¹⁰⁾ 북한측은 이 지역에 輕工業(메리야스, 실크, 화장품, 담배 등), 전자공업(IC, 반도체, 비디오, 녹음기), 重工業(공작기계, 측정기, 유압기, 선박수리), 식품(수산 야채, 온실 음료), 목재 가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誘致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개발기구의 두만강 개발계획 및 나진·선봉 自由貿易地帶 구상은 관련된 국가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이 지역의 社會間接資本이 낙후되어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투자의 입지로는 부적절하다. 나진-선봉지역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남한은 먼저 同 地域의 社會間接資本 확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를 하든가, 外資 혹은 民間資本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10) 北韓側이 평가·계획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 開發計劃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라진,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 참조.

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UNIDO 프로젝트를 사업유치의 대상 地域面에서 보면 총 8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양·남포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¹¹⁾ 북한은 외국인 投資誘致를 위해 두만강유역과 같이 政治的 危險性을 극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려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그 보다는 投資與件이 좋아 단시일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남포합작공단의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남포는 인구 80만의 북한 제2의 도시로 평양에서 48km 거리에 있는 貿易港이며 産業都市이다. 현재 제련소, 유리공장, 선박수리공장, 트랙터공장, 제강소, 중기계공장 등이 입지하여 있으며 평양과는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남포는 사회간접자본이나 工業生産 기반도 갖추어져 있으며, 軍事都市로서의 특성상 필요한 곳을 외부와 격리시켜 人力과 物資의 왕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남포는 南北 合作事業 추진이 가장 유망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남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남한측은 우선 낙후된 공장설비의 대체, 신

11) 「시사저널」(1992년 8월호), pp. 56~57.

12) 1992년 10월 남한측에서 大宇그룹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이 남포를 방문하여 투자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交通·전력·용수시설 등의 立地條件이 양호하며, 공장이 이미 건설 중에 있어 기계설비만 갖추면 곧 생산이 가능하고, 풍부한 勞動力을 확보할 수 있어서 投資條件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설비의 투입, 資材需給을 원활히 하는 物流體系의 형성 등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포 이외에 북한이 유엔공업개발기구에 제시한 事業地域과 남한측에서 合作工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과 일치하는 곳은 해주, 원산 등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이러한 經濟特區가 많이 확산되면 될수록 이는 남북 經濟關係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측은 합작으로 經濟性を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사업이 다양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 制度的·行政的 支援 및 與件 造成

남북 合作事業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실현하여 投資障礙要因을 제거하고 投資促進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果實送金, 지적 소유권·특허권의 보호 및 상호이용, 기술적·법률적 정보 상호교환, 紛爭解決節次, 왕래자 신변보장, 북한 勞動者의 임금수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이 남북간에 합의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投資保險制度 등 對北投資를 촉진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 여건은 북한이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同法에도 「합영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原價計算, 必要經費 認定, 재

고자산평가, 감가상각, 外換換差損益評價 등에 대한 會計處理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합영법」이 규정하고 있는 合營會社 의사결정의 만장일치제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 채용과 해고 규정, 토지 임차료 등도 확실히 규정되지 않았다. 남한으로서는 다양한 合作事業을 추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미비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은 북측이 선호하는 첨단기술과 資源開發 및 下部構造 건설부문¹³⁾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이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이 合作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제3국과 무역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法的·外交的인 對備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은 GATT의 原產地規定에 의해서 北韓産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敵性國으로 분류하고 있고, EC는 債務辨濟 不能國 또는 破産國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제품의 對美國 및 對EC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미국과 기술제휴나 合作을 하고 있는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도 미국의 國內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에 저촉될 수 있다. 남한은 이와 같은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한 法的·外交的인 對備策을 마

13) 「외국인 투자법」 제7조와 제8조는 이 분야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 우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련해야 할 것이다.¹⁴⁾

남한정부는 북한의 유망 投資可能 事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남한의 企業에 제공하고, 북한기업에 남한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남측의 합작선을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中小企業의 對北投資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나 기타 관계자를 포함하여 「對北投資促進 協議會」를 구성하여 投資情報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投資地域과 품목선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협의회는 交易擴大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던 「남북교역 정보센터」를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統一院의 주도하에 기존의 統一院 人力과 財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협의회에서는 또 합작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不公正行爲에 대한 감시와 기타 紛爭의 調整을 위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對北韓 合作 投資를 위한 민관합동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추진하거나, 기술자·경제인·투자자의 交換訪問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북투자촉진 협의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14) 미국회사와 합작한 영국·독일의 회사들이 舊蘇聯의 送油管 건설에 필요한 資材를 수출하려는 데 대해 美國政府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영국·독일의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미국 정부가 후퇴한 예가 있었다. 남한도 이와 같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24, 1992, p. 34.

북한의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3) 資源의 共同開發 및 多者間 協力の 活用

남북 경제협력 중 농수산자원·지하자원·관광자원 등의 共同開發은 양측이 그 필요성과 利點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협력대상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바 있다. 남북한의 産業構造 및 資源賦存現況을 감안한 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간 經濟協力の 중요한 형태가 될 것이다.

水産資源의 공동개발은 남북 협력사업의 유망분야이다. 한반도의 동서해안에는 명태, 오징어, 홍어 등 다양한 어종이 계절별로 南北을 回游하고 있어 漁場이 남북에 걸쳐 형성되나, 軍事分界線으로 어장이 분단되어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共同漁撈水域을 설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은 먼저 군사분계선 부근 漁場에서의 공동어로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 지역에 互惠의 原則에 입각해 조업어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⁵⁾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는 남북이 共同漁撈水域이나 상대방 지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류와 물량(쿼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15) 이와 같은 水産資源의 공동개발은 남북경제회담에서 의견접근을 본 바 있고, 북한이 우려하는 남북한 合作·合營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문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水産 合作·合營會社의 공동운영, 원양어업의 공동진출에 대해서도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로장비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하든가, 合作·合營會社를 설립하여 남한측이 장비와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이 勞動力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은 鑛物의 대부분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고 북한은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한은 經濟會談 당시 북한측이 제안하였던 철광석·무연탄·납·아연·니켈·마그네사이트 등 地下資源의 共同開發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사업으로는 먼저 남북한이 공히 추진 중인 대륙붕 지역 地下資源 開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북한의 대륙붕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제3국 企業의 지분 중 일부를 우리측 기업이 인수하는 방법이나 남북한 모두가 대륙붕광구로 지정하지 않은 西海 軍事分界線 일대를 공동개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觀光資源 공동개발은 비교적 대규모의 人的 往來를 전제로 하므로 북한측은 이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수한 觀光資源을 보유하고 있고 이의 개발은 外貨獲得에 도움이 되므로 정치적 위험부담이 커지지 않는 한 도내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觀光團地의 개발, 남북한을 연결하는 동해안 관광단지의 개발, 비무장지대의 生態界 公園化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일본·한국·중국·러시아를 잇는 관광코스

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초기에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는 外國人만을 허용하여 북한의 불안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觀光資源은 한국의 관광회사나 관광공사 등이 對外弘報와 판매를 대행할 수도 있고 양측이 合作·合營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합의된 남북의 共同 對外進出도 資源 共同開發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북한체제에의 위협이 적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이해가 합치되는 프로젝트라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베리아·중국·동남아 등 제3국의 자원개발에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資本과 技術, 북한의 勞動力이 결합하여 중국의 農業地域 개발 및 시베리아지방의 석탄·가스·목재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베리아와 남북한을 통과하는 송유·가스관의 건설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가들 사이에는 多者間 經濟協力の 場을 구성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지역 경제권, 혹은 이를 더욱 확대한 環太平洋 經濟圈 구상도 제시되고 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이 具體化된다면 남북한 經濟關係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한은 이와 같은 多者間 協議·協力體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남북간 적극적인 협력의 기회를 넓

히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한 유엔개발기구의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多者間 協力 體가 남북 經濟協力の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만강 개발의 最終計劃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남한은 經濟性과 기타 상황을 고려한 후 가능하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開發計劃이 확정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엔개발기구 이외에도 유엔의 각종 專門機構들을 통해서 남북간의 經濟協력이 행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그 밖에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PECC), 「태평양 경제위원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PBEC) 등 地域經濟協력과 발전을 위한 多者間 協議機構들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行爲規範을 배우고 또 實質的 利益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方案들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經濟特區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하여 외부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이 방안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조급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이들은 북한이 근본적인 經濟改革을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남북한간의 經濟交流·協力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북한이 보다 實質的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나. 經濟共同體 形成段階

(1) 産業構造 調整

이 단계에서 북한은 시장가격의 도입, 기업소의 自律性 확대, 경제적 의사결정의 分權化 등 본격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 경제특구가 活性化되어 외국자본과 기술의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남북한은 꾸준히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서로 중요한 무역상대국 및 經協파트너가 될 것이며, 상호보완성과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남북한의 자원·노동력·자본·기술 등 生産要素를 가장 적절히 조합하기 위해 협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 部門別 統合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機能主義에 입각한 교류·협작파트너의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은 유럽공동체 형성 초기에 추진되었던 部門別 統合과 유사한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와 「남북한

원자력공동체」를 추진한다. 특히 석탄·철강·원자력 등 軍備와 관련이 깊은 부문의 生産·輸出·消費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개하고, 남북한간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하며, 平和的目的을 위해 공동 개발하는 것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 북한이 産業基盤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남북한은 가능한 품목·부문부터 相互市場開放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상호 시장개방은 북한에서 流通體制가 정비되고 價格自由化가 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간의 技術水準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품목간의 特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섬유·의류분야에서 단계별로 市場開放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남북한이 공작기계나 농기계 부품의 가격·반출입물량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상호 유통을 自由化하여, 어느 일방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韓半島 전체에 유통될 수 있는 部門別 統合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장기적으로 자동차와 같이 규모가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도 部門別 統合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남북간의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는 한 처음부터 제한없는 部門統合은 어려울 것이므로, 초기에는 兩側이 합의하여 완제품에 포함되는 部品の 原產地比率, 搬出入 物量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점차로 제한을 축소·철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산업구조조정협의회」設置

남북한 産業構造調整의 기초는 남한의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과 북한의 經濟改革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자가 相互 補完的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교역과 합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한은 國際競爭力을 상실한 勞動集約的 産業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高附加價値의 成長産業을 육성하며, 북한은 낙후된 설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저부가가치 勞動集約的 部門부터 점차로 생산성과 國際競爭力을 높여가게 될 것이다.¹⁶⁾ 그러나 남북한의 垂直的 協力構造와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이 賦存 生産要素의 불리를 극복하고 産業構造를 고도화하여 水平的인 分業도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産業構造調整을 위해서 남한정부는 남한기업에 각종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이전되는 설비, 남북한 構造調整 過程에서 남한에 新規投資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 일정한 면세혜택을 준다든가, 低利貸出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남한정부는 노동력이 退出하는 부문에서 성장하는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再教育을 지원한다. 아울러 남북한은 工業規格 方式 및 技術用語의 통일을 추진한다.

16) 북한의 産業技術水準은 비철제련분야만 남한보다 2~3년 가량 뒤져 있을 뿐 대부분의 산업이 남한보다 10년 이상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韓國 産業銀行, 「南北産業技術 現況과 協力方案」참조.

남북한은 産業構造調整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측의 각료급 관계자와 민간부문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에서 남북한은 체계적인 남북 共同産業政策을 지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하에 構造調整의 대상산업·품목 선정, 구조조정 방법의 협의, 유망산업의 선정과 지원, 쇠퇴산업의 移轉이나 退出 誘導, 失業의 흡수와 業種轉換 등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협의회」가 協議機構의 성격을 넘어 구속력을 가진 의사결정기구로 발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상당히 진전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다) 經濟特區와의 連繫

남북한의 産業構造 調整은 우선 북한의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봉·나진·남포 등 경제특구가 성공하면 이와 유사한 特區가 청진·해주·신의주 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특구들이 각각 고립된 수출기지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經濟特區間이나 特區와 여타 北韓地域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은 「산업구조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북한에 기존의 特區 이외에 추가로 경제특구로서 지정될 만한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北側에 제시하는 한편, 북한과 공동으로 후보지역의 입지와 投資條件을 분석하여 이들 지역이 효율적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經濟特區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들은 中間材·部品 등을 특구밖에 있는 북한기업으로부터 현지 조달하고 이들에 經營技法과 技術의 移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의 여타 지역들은 점차 經濟特區에 위치한 기업들과 垂直的 協力關係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서로 生産施設을 연결하여 남북한 전체를 포함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社會間接資本 擴充의 共同計劃

한편 남북한은 안정적인 에너지·전력 공급과, 한반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송·통신망 등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을 위한 投資方案에 대해 협의하고,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를 대비한 國土綜合開發計劃의 차원에서 共同計劃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 電力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인 바, 남북한은 각 지역의 전력수급 현황, 발전 시설의 입지, 송전망 건설 방법, 環境問題 등을 고려한 共同 電力開發計劃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陸上 運送體系는 북한의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縱軸과 동해안의 함경북도지역에서 원산에 이르는 종축, 평양-원산간의 동서 연결축과, 남한의 수도권-호남권 종축, 수도권-영남권 종축과 동해안 종축을 기반으로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서울-원산, 서울-평양, 동해안 육로를 연결하여 韓半島 전체를 잇는 輸送體系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각 육로의 終端點에 대규모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이들을 海路와 연결하여 陸路와 海路의 보완효과를 도모하고 沿岸運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 남북한은 韓半島의 수송망을 중국·러시아의 태평양진출 수송망과 연결하여 한국을 동북아 화물유통의 중심지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남북한관계가 經濟特區를 거점으로 확대되면서 항만·도로·철도의 건설로 우회적 및 직선적 수송망이 확충되어 가면, 남북한은 非武裝地帶에 「平和市」를 건설하여 분과위, 공동위, 각종 협의회 등을 입주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技術協力을 추진하여 정보·자료 교환을 制度化하고 인적 교류(기술자·학자 등의 회의, 상호방문, 유학, 시찰 등)를 확대 실시하고 制度化하여야 한다. 남북한은 言語·文化的인 同質性을 고려할 때 기술협력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¹⁸⁾

남북한 産業構造調整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勞動力을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결합하여 統一을 지향하는 民族經濟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는 무역이나 국제적인 資本·技術의 흐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開放的인 體制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產

17) 정필수, “남북 해상운송 및 화물유통체제 구축방안”(한우리정경연구원 주최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4. 4), pp. 57~58.

18) 남북기술협력에 대한 대체적인 연구로는 김광두, “남북간 기술협력 방안의 모색”(한우리정경연구원 주최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4. 4.); 韓國産業銀行, 「南北韓의 産業技術現況과 協力方向」참조.

業構造調整은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지역국가들과의 다자간 협력 또는 地域經濟圈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보완적인 구조조정과 아울러 國際的 分業體系 속에서 남북한의 위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南北聯合 推進

(가) 南北聯合 機構의 設置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機構를 구성한다. 또 남북한은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합의하고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 「남북한 원자력공동체」, 「산업구조조정협의회」 등 기구들을 南北聯合의 기구로 통합·편입시켜 남북한 經濟共同體의 기구를 설치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產業構造調整段階에서 행해진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더 심도있고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政治的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가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은 연합기구들을 통해 經濟體制와 經濟運營의 原理를 상호 접근시킬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政治的인 合意를 도출해 가며, 聯合機構들의 권한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 北韓의 價格改革 措置 支援

남북한이 연합을 추진하는 시기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計劃經濟와 市場經濟의 二元的 構造를 지양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상호 경제체제의 同質性 확보와 경제력 격차의 축소를 목표로 협력해 나간다.

이 단계에서 북한이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經濟改革政策은 전면적인 價格自由化이다. 남한은 북한의 價格改革 조치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폭등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에서 부족한 물자들 중 남한의 재고량이 높은 품목들을 북한에 無償으로 원조하든가,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는 임시적인 대응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북한의 價格改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지속적인 産業協力과 협의·조정을 통해 북한의 産業生産能力이 확보되고, 유통구조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價格自由化 조치로 당국의 가격 규제를 받는 품목이 국내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市場經濟體制가 형성되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通貨政策의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남북각료회의하에 양측의 중앙은행장을 포함하는 「금융·통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의 개괄적인 通貨 目標와 운용지침을 설정하고, 남북한 貨幣間의 換率變動 폭을 설정하는 變動換率制나 固定換率制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換率 설정은 북한의 生産性 수준을 반영하면서 경제공동체하에서 북한주민에게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선에서 均衡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 남한측은 북한에 市場經濟體制에서의 통화관리, 財政, 환율·이자율 조정, 국제수지 관리 등의 개념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남북한 市場의 점진적인 統合過程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각료회의의 각 기구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北韓의 民營化 措置 支援

북한은 價格自由化 조치와 아울러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財政負擔의 원인이 되는 국영기업의 民營化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라 株式市場이 형성되어 民營化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할 것이다. 남북한은 북한의 民營化 추진과 관련하여 南北聯合 기구 아래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民營化管理 協議會」를 설치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협의회는 민영화되는 북한기업의 資產 評價, 自生力 評價 등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의 民營化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戰略産業分野에 대한 외자참여 제한은 어느 국가에서도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바, 남북한도 外資의 참여 허용 분야와 참여 정도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된 기업은 經營技術과 財政的 基盤을 갖추어 市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개편되고 새로운 투자를 끌어 들여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민영화관리 협의회」는 南北企

業의 기술제휴를 적극 장려하며, 경영자·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 기업들이 生産性을 높이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정부는 필요에 따라 북한의 民營化 企業에 투자하는 남한의 기업에 低利로 資金을 지원하든가, 세제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정부가 직접 民營化 企業을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財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인 企業經營 合理化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價格自由化와 民營化 조치를 취하고 私的 所有權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련이나 동유럽에서는 그러한 조치로 인해 오히려 물가 폭등과 함께 産業生産이 급격히 감소되고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失業事態가 발생하였다. 북한 경제가 그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간의 經濟力 隔差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財政的 問題를 북한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한은 統一稅, 통일성금, 통일채권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여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이 IMF, ADB, 혹은 기타 西方國家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産業資金의 조달을 위해서 金融産業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남한의 은행·금융회사들이 지점·사무소를 개설하여 북한에 合作으로 혹은 單獨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라) 關稅同盟 推進

남북한은 經濟體制間의 同質化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남북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공동체 형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의 이동을 自由化하는 자유무역협정 및 대외적으로 共通關稅를 채택하는 關稅同盟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自由貿易協定은 각 부문별로 북한의 경쟁력 확보의 정도, 시장기구의 적용 수준, 국내정치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協定對象 품목·부문과 실행시한을 差等化하여 多段階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이 합의하는 특정 상품이나 분야, 특히 북한이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는 自由貿易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한편 남북한은 自由貿易協定·關稅協定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紛爭의 해결을 위해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구는 양측을 각각 대표하는 同數의 전문가와 양측이 합의한 다수의 제3국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共同市場 推進

북한이 市場經濟 체제를 갖추어 남북한 경제가 同質化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고도성장기¹⁹⁾에 들어서면, 남북한은 經濟協力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共同市場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동시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 市場의 점진적 통합
- 공동의 연구·기술개발
- 국내 및 대외 經濟政策 협의·조정
- 地域的·構造的 隔差의 감소
- 南北聯合機構 권한의 지속적인 확대·강화
- 公害·環境·保健問題 등의 공동대처

남북한은 먼저 市場의 統合을 위해 상호 자유로운 투자, 기술협력, 회사설립 등에 장애가 되는 物理的, 技術的, 稅制的 障壁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物理的 障壁의 제거를 위해 상품의 남북한 경계선 통과시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人的 移動을 위한 제도가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적 장벽의 제거를 위해 共通 附加價值稅와 共通 消費稅率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술 표준화, 시험검사제의 단일화, 기술규제의 單一化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9) 이영선은 남한이 매년 증가된 生産量만큼 북한에 투자한다면 북한 경제가 연 10%이상의 成長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영선,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11), p. 11.

단 북한지역의 勞動生産性이 남한지역의 노동생산성에 근접해 올 때까지는 고급기술자나 관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北에서 南으로의 勞動人口 이동을 당분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동력의 自由移動이 허용되면 남북한의 賃金 및 경제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노동력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 이는 북한 지역의 産業空洞化를 초래하거나 남한에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人口移動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상적으로는 北韓地域에 고용기회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共同市場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共同研究·技術開發을 추진하여 상호 능력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同一 技術에의 중복투자를 줄이며 개발된 기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관리·지원은 남북연합 기구하의 연구·개발관계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經濟政策面에서는 국내적으로 남북한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豫算·通貨·金利政策이나 稅制 등을 통해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상반된 경제정책이 共同市場의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市場開放問題, 특정 국가와의 通商關係 등에 대해 南北이 협의하고 정책보조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統一國家를 이루기 위해서는 經濟共同體 形成過程에서 나타나는 남북간의 경제·사회적 제반 문제들

을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市場經濟로 전환하고 남북한이 共同市場을 추진해 가게 되면, 남북간의 경제 문제는 좁은 의미의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社會·經濟分野 전반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가 統合되어 가는 과정에서 産業構造調整에 대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동안 대량의 失業이 발생할 것이다.²⁰⁾ 그러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기업도산과 失業問題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構造調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失業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對策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 각지에 직업훈련교육소와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一例가 될 것이다.

한편 市場經濟의 원활한 운영은 이에 참가하는 행위자의

20) 한 연구에 의하면 經濟統合 이후 적정 산업구조로의 轉換過程에서 북한 就業者의 거의 50%가 직종의 전환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남북한이 산업구조조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2000년에 급격히 統合되어 북한의 産業別 就業構造가 남한과 동일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987년을 기준으로 한 북한 산업인구중 農業 종사자(농장원) 115만명과 광업·제조업 종사자(국영기업소 및 협동기업소의 노동자) 348만명이 3차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백만명의 失業者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택기, “남북한 경제관계발전을 위한 부문별 과제연구,” 韓國開發研究院 編, 「南北韓 經濟統合과 産業構造 調整」(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pp. 30~31; 남북한의 노동시장 전망과 노동력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김수근, “북한의 잠재인력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한우리 정경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4. 4.) 참조.

교육과 의식구조 등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經營人, 금융전문가, 産業技術者 등 시장경제 체제를 이끌어 갈 관리자층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경쟁적 근로의식을 확립하여 새로운 賃金體系 및 勞使關係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職業教育 이상으로 북한주민들이 市場經濟內에서 남한주민들과 일체감 (social integration)을 갖고 맡은 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地域的인 不均衡을 시정하고 사회복지 확대하기 위한 地域開發計劃을 수립하여 북한의 각 지역들이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第V章 結 論

본 연구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統一을 달성할 때까지 추구해 나갈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남북한 체제간의 異質性 극복, 상호 보완적 경제성장의 필요성, 북한 경제의 經濟改革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産業構造 調整, 南北聯合 推進, 共同市場 推進의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남북한이 상호 市場을 開放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의 상태에 이르면 經濟共同體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재 남한의 GNP는 세계 15위, 무역량은 세계 11위의 수준이며,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韓半島는 인구 7천만의 市場이 되는데 이는 人口面에서 세계 14위의 규모이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내에서 북한의 저렴한 勞動力과 풍부한 資源, 남한의 技術과 資本이 결합되면 規模의 經濟와 相互 補完性 제고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질체제간에 統合을 달성한 독일과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경우를 보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발전단계에 있는 市場經濟圈 國家들이 장기간에 걸쳐 漸進

的인 統合을 시도하고 있는 유럽공동체도 그 형성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우 북한은 市場經濟로의 전환이라는 難題를, 남한은 남북 經濟力 隔差를 줄이기 위한 費用의 조달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가져다 줄 장기적인 成長效果를 기대하기에 앞서, 統合에 따르는 중·단기적인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남북한 經濟統合을 이루고 남북한 전체 경제의 균형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한은 앞에서 제시된 방안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공동체 形成過程은 각 단계별로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의 발전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인 바, 次期 段階로의 이행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政治的인 妥協을 도출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政治·軍事的인 問題와 經濟關係 추진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企業의 利潤追求에 바탕을 둔 經濟論理와 南北統一을 지향하는 政治論理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의 경제적인 이익보장만을 전제로 남북간의 交易이나 合作을 추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없

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政治論理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기업의 對北投資 危險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對北經協 및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一貫性있고 現實性있는 기본원칙과 구도를 설정·천명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對北經濟交流·協力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費用이 필요하다. 남한 정부는 北韓地域에의 투자나 기타 경제적 지원을 위한 財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남한의 國民經濟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남한의 경제적 희생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요구된다. 한편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統一費用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海外借入이나 外國人 直接投資에 의한 자금유입도 불가피할 것이다. 남북한은 일본 등 어느 특정 국가가 북한 경제에 대해 主導權을 장악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도입선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한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남북한과 제 3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현재 經濟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資本 조달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북한의 核

武器 개발 의혹이 해소된다면 北·日修交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對北修交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경협자금을 배상금 형식으로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간의 經濟關係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여타 제3국이 북한과 經濟協力을 추진하는 데 대해 남한은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지역 국가들 사이에는 環太平洋 經濟圈, 環東海 經濟圈 등의 地域經濟協力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APEC, PECC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대화의 場(forum)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바, 남한은 이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同 機構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域內 多者間 經濟協力 속에서 남북간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세계적으로 市場의 自由化, 開放化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은 經濟發展段階의 차이로 인해 각기 상이한 對外經濟·通商政策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關稅·非關稅 障壁을 계속 낮추고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북한은 産業을 育成하고 經濟成長의 基盤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國內産業保護를 위한 장벽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對外經濟關係를 향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인 바, 한국은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社會福祉政策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대내적 통일기반을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가능하며 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될 때, 비로소 政治的 統一基盤이 완비될 것이므로 한국은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문제와 연계·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摸索」. 서울: 國土統一院, 1989.
- _____.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서울: 國土統一院, 1990.
- _____.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서울: 國土統一院, 1990.
- 金世源. 「韓國의 國際經濟政策」. 서울: 貿易經營社, 1987.
- _____. 「EC의 經濟·市場統合」.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90.
- 金瑩允, 余仁坤, 黃炳惠.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金潤煥, 尹錫範, 朴春三. 「韓國의 大사회주의 제국 경제진출과 통일여건 전망」. 서울: 통일원, 1990.
- 金峻漢 外. 「獨逸經濟統合의 推進施策과 示唆點」. 서울: 産業研究院, 1992.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獨逸 經濟社會統合 研究를 爲한 短期調査團. 「獨逸經濟社會統合에 관한 研究」.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 閔充基.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 朴濟勳.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서

- 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 베르너 푸쉬라, 金元植 編. 「統一獨逸의 社會經濟的 變化」.
서울: 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 1992.
- 북한경제연구센터. 「1989~90년 北韓經濟 概觀」(研究資料
91-06).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 孫炳海. 「經濟統合論: 理論과 實際」. 서울: 法文社, 1988.
-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딜受容 可能性과 關聯」. 서울: 民族統一研究
院, 1992.
- 安承喆. 「國際經濟의 理論과 政策」. 서울: 法文社, 1989.
- 外務部. 「예멘共和國概況」(執務資料 91-48). 서울: 外務部,
1991.
- 李東輝. 「北韓의 開放 可能性」(정책연구씨리즈 90-24).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0.
-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林陽澤. 「南北韓 産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韓國經濟研究院, 1989.
- 제일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과 기업의 대응전략」(경제
연구 91-04). 서울: 제일경제연구소, 1991.
- 최남용. 「독일통일과 유럽경제」. 서울: 한신경제연구소, 1991.
- 崔東熙 編. 「동유럽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서울: 나남,
1991.
- 統一院. 「北韓·統一 研究 論文集 IV: 交流·協力分野」. 서울:

- 一院：1990.
- _____ . 「獨逸統合研究 資料集」. 서울：統一院, 1990.
- _____ . 「北韓·統一研究 論文集 II：南北交流·協力分野」. 서울：統一院, 1991.
- _____ .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서울：統一院, 1991.
- _____ .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 서울：統一院. 1991.
- _____ . 「예멘 統一過程調查 現地出張 結果報告書」. 서울：統一院. 1991.
- _____ .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 서울：統一院, 1991.
- 韓國開發研究院 編.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部門別 課題研究」. 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91.
-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91.
- _____ . 「南北韓經濟關係 發展을 위한 基本構想」. 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91.
- 海外投資研究所.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서울：韓國輸出入銀行, 1991.
- _____ . 「北韓의 經濟開發과 産業概況」. 서울：韓國輸出入銀行, 1991.
- _____ .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 서울：韓國輸出入銀行, 1991.
- 홍문신.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효과분석」. 서울：産業研

- 究院, 1984.
- 황의각. 「北韓經濟論: 南北韓 經濟의 現況과 比較」. 서울: 나남, 1992.
- Balassa, Bel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61.
- Cechini, Paolo. *The European Challenge 1992*. EC Commission, 1988, 이종항 譯. 「유럽의 挑戰 1992」. 서울: 형설출판사, 1990.
- Doern, Bruce G. *Europe Uniting*. Toronto: C. D. Howe Institute, 1991.
-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 Jessop, Jeffery.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gr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Aldershot: Edward Edgar, 1990.
- Pinder, John. *European Community: The Building of a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1991.
- Porter, Michael.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 Späth, Rothar. *Der Traum von Europa*.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1989, 홍순도, 김경숙 譯. 「유럽의 꿈」. 서울: 동아출판사, 1991.

2. 論 文

- 김광두. “남북간 기술협력 방안의 모색” (한우리정경연구원 주최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4. 4).
- 金世源. “南北合意書의 南北間 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實踐 課題”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발표논문, 1992. 4. 24).
- 金世源. “마스트리트 合意와 유럽의 經濟·通貨同盟.” 「經濟論集」, 제30권 제 4 호. pp. 389~399.
- 金秀坤. “北韓의 潛在人力開發과 活用に 관한 研究” (한우리 정경연구원 주최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4. 4).
- 朴奇煥. “南北經濟協力 統合方案과 統一祖國의 바람직한 經濟 秩序”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6. 19).
- 延河淸. “東北亞 經濟環境變化와 南北韓 經濟協力.” 「統一問題研究」, 第 3 卷 2 號 (1991 여름), pp. 95~122.
- 이영선.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11).
-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통일방안 논문집), 제 3 집. 서울: 통일원, 1991.
- 許 宣. “統一費用은 損費아닌 投資.” 「新東亞」 (1991년 11월), pp. 232~241.

- 林陽澤. “北韓經濟의 開放 및 改革 展望.” 「統一問題研究」, 第3卷 1號 (1991 春), pp. 75~105.
- _____. “第3의 南北韓 統一方案과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 一段階別 推進戰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2. 27).
- 전성홍. “북한체제변화에 있어서 중국모델 수용 고찰.” 「北韓」, 通卷 第239號 (1991. 11), pp. 121~130.
- 丁必洙. “南北 海上運送 및 貨物流通體制 構築方案” (한우리 정경연구원 주최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4. 4).
- 洪升基. “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 研究.” 統一院. 「北韓·統一研究 論文集 II: 南北交流·協力分野」. 서울: 統一院, 1991.
- 洪升基·劉浩種·李贊度. “南北韓 經濟協力과 海外合作投資 方案 研究.” 統一院. 「北韓·統一 研究論文集: 交流·協力分野」(統一院 90-12-93). 서울: 統一院, 1990.
- 洪澤基. “南北韓 經濟 統合과 産業構造調整.” 韓國開發研究院 編.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部門別 課題研究」.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研究報告書 92-1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2년 12월 23일

發行日 1992년 12월 26일
